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1. 4. 27.



여성가족부

순 서

I . 수립배경 및 경과	1
II . 가족변화 및 전망	3
III . 제3차 기본계획 추진 평가	7
1. 주요 성과	7
2. 한계 및 향후과제	11
IV .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12
V . 정책과제	15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6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33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61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77
VI . 향후계획	89

I. 수립배경 및 경과

가족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필요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제1차('06~'10), 제2차('11~'15),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 수립
- 그 동안의 가족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족 변화 등 정책 환경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을 수립할 필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 마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연구('20.3.~12월) 및 논의를 통해 시안 마련
 -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3회), 워크숍** 등 진행
 - * (4.10) 추진방향 도출, (4.17) 정책목표·과제, (6.12) 영역별 정책과제 논의
 - ** (9~10월)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 정책과제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가족정책포럼 개최
- 영역별 워크숍('20.12.~'21.1월)과 공청회('21.1.26.) 개최, 시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의('21.1.20.~'21.4.6.)

제1차~제3차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1차~제3차 기본계획('06~'20)

- (정책비전) “가족 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
- (정책목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가족 안에서 남녀 간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

□ 제3차 기본계획 수정('18.8월)

- (검토배경) 가족형태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다양한 가족 포용 등 핵심 국정과제 반영
- (추진방향)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소통·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정책목표로 설정, 5개 영역*별 68개 과제 수립·추진

* ①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②함께돌봄 체계 구축, ③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④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⑤가족정책 기반 조성

<제1~3차 기본계획의 구조>



Ⅱ. 가족 변화 및 전망

□ 가족의 구성과 형성 방식 다양화

-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10년 23.9% → '19년 30.2%),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 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 감소 추세('10년 37.0% → '19년 29.8%)
- 혼인 감소, 만혼화 현상의 고착화 및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가족 구성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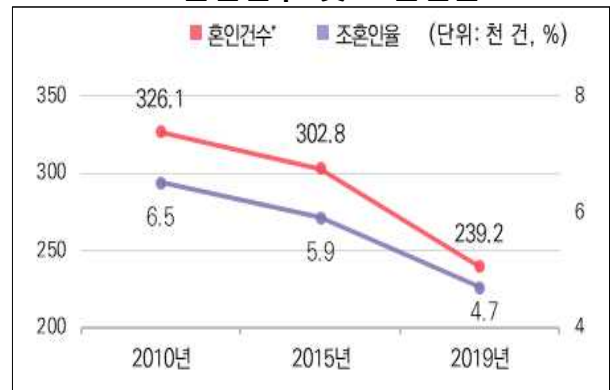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20대 47.5%, 30대 59%, 60세 이상 87.9% ('20. 통계청)

<가구 구성>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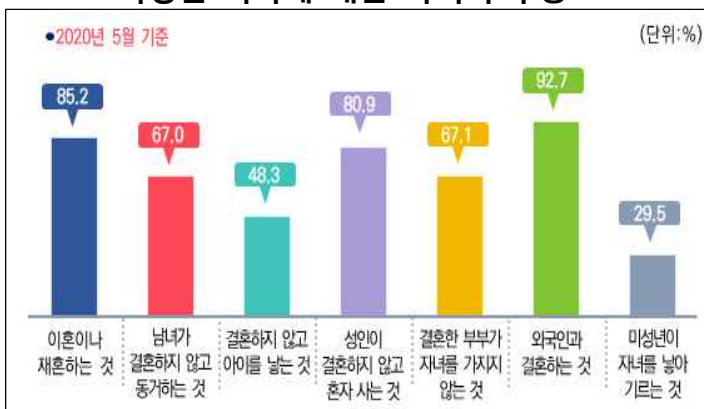


* 조혼인율: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
통계청('19)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비혼 출산·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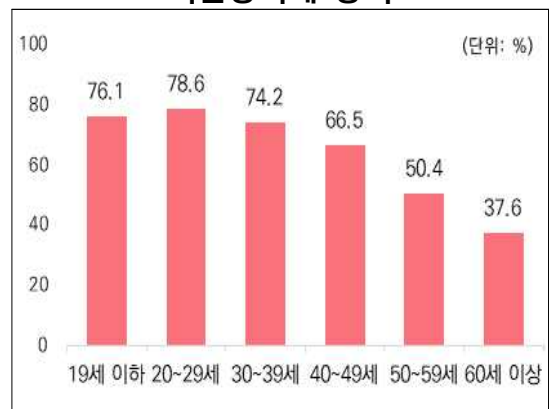
*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이라는 데 동의 : 69.7% ('20.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여성가족부('20).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비혼동거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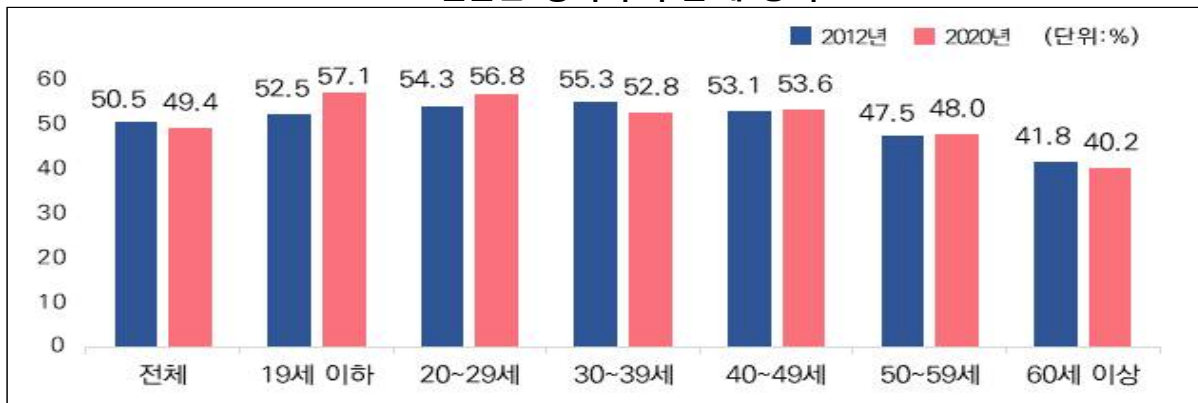
통계청('20). 사회조사

□ 가족 내 개인 가치 부각, 젠더 갈등 지속

- 확대가족에 기반한 집단으로서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대

*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가 우선’ : 20대 56.8%, 30대 52.8%, 60세 이상 40.2% ('20. 통계청)

<결혼은 당사자 우선에 동의>



통계청('20). 사회조사

- 남녀 모두 일을 중시하며,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은 평등을 지향하는 반면, 가사·돌봄 분담에서의 불평등 여전, 남녀 갈등 지속

* 청년세대 남녀 모두 생애 과업 1순위가 ‘일’(남 35.9%, 여 36.2%)

*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10년) 남성 31.2% 여성 42.2% → ('20년) 남성 57.9%, 여성 67.0%(통계청, 사회조사)

*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1일 평균) : (여) 3시간 7분, (남) 54분

<성별 가사노동시간>



통계청('19). 생활시간조사

<청년세대 생애과업 비중 인식>



김은지 외('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가족 유형별 소득 격차 지속, 돌봄·부양 기능 약화

- 소득 분배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으나 가족 유형별 경제적 격차는 여전하고,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11년 0.388 → '18년 0.345(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 유형별 (연)평균소득 : 전체 5,828만원, 한부모 3,661만원, 조손가구 3,79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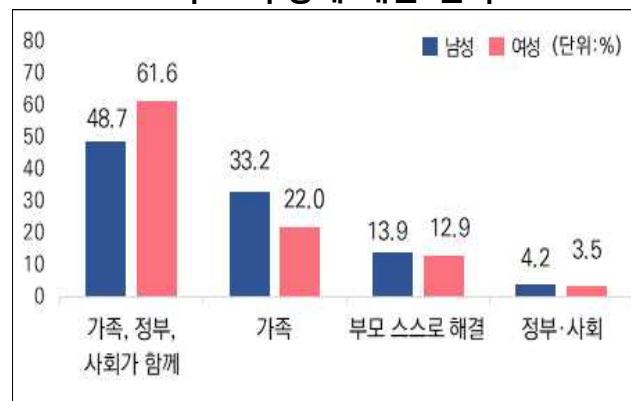
* 부모 부양 주체가 '가족'이라는 인식 : ('12년) 33.2% → ('20년) 22.0%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통계청외('19).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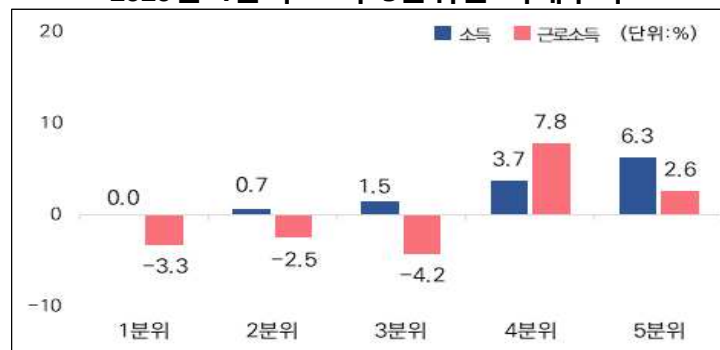
- 코로나 19 지속과 함께 가족의 돌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중

- 휴원·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자녀돌봄의 공백*, 실직·휴업 등 일자리 불안으로 저소득층 가족 소득** 감소

*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간 돌봄공백 경험 : 36.2% (맞벌이 49.4%, 외벌이 21.2%) ('20년. 육아정책연구소)

**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변화 : (하위 20%) 3.3%↓ / (상위 20%) 2.6%↑ ('20년. 통계청)

<2020년 1분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통계청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가족시간과 일·생활 균형 욕구 증대, 돌봄 부담 체감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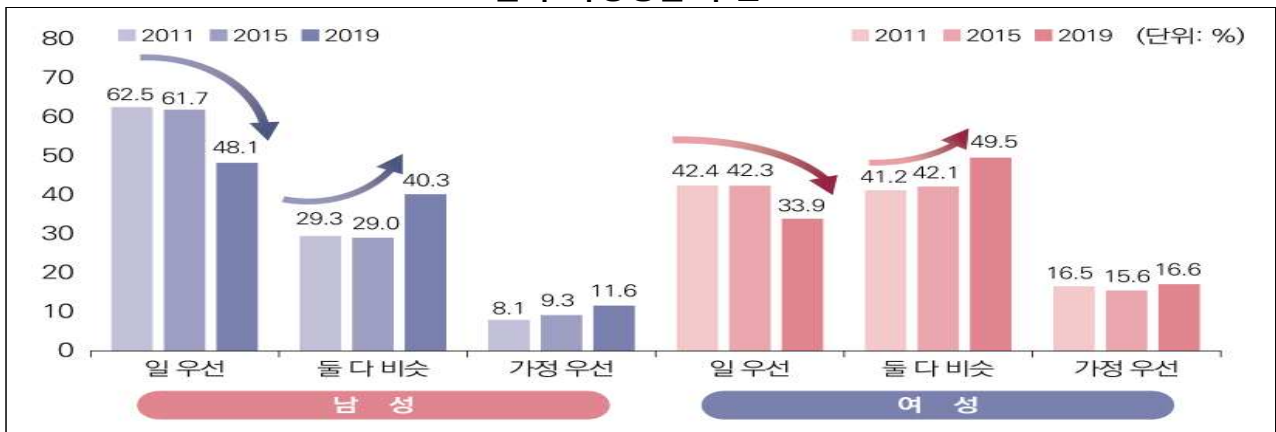
○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

-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이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비중 증가

* 일 우선 : 남성 ('11년) 54.4%→('19년) 42.1%, 여성 ('11년) 42.4%→('19년) 33.9%

* 일·가정 비슷 : 남성 ('11년) 29.3%→('19년) 40.3%, 여성 ('11년) 41.2%→('19년) 49.5%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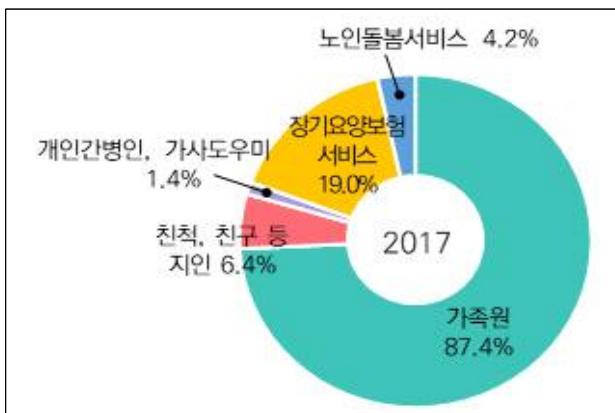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돌봄 인프라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의 어려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등으로 가족(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높은 실정

* 연평균 노동시간 : OECD 평균 1,734시간 / 한국 1,967시간('18년 기준)

* 노인돌봄 주행위자('17년) : 가족원 87.4%,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20년) : 여성 62%

<노인 돌봄 주행위자>



보건복지부('17). 노인실태조사

<2020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20)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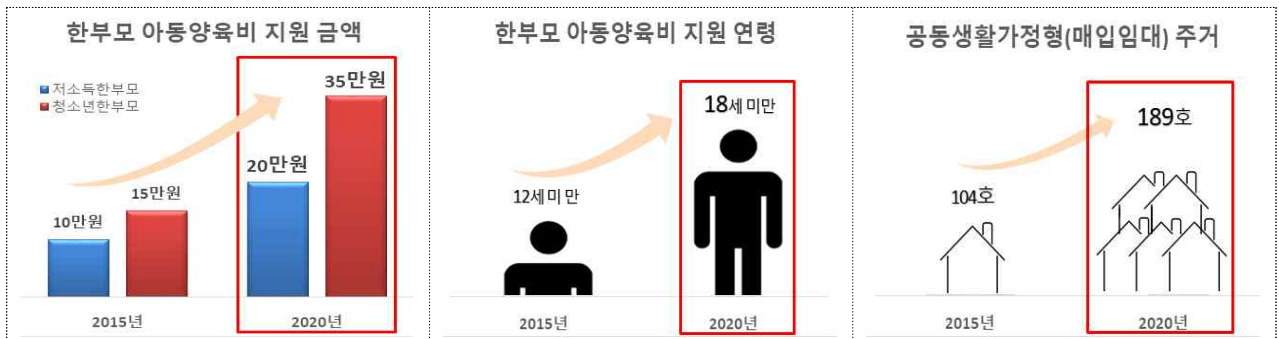
1 주요 성과

□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등 자립 지원을 강화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만 34세 이하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근거 마련(한부모가족지원법, '20.10월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내용 확대>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

* 양육비 이행금액/이행률 : ('15년) 25억원/21.2% → ('19년) 262억원/35.6%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 (양육비이행법, '18.9월 개정),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양육비이행법, '20.6월 개정) 등 제도개선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정착 및 경제·사회적 자립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자녀성장 프로그램 : '16년에 시작 → ('20년) 196개소

- 아동수당 도입('18년), 가족센터 건립('15년~)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기반* 마련 및 사고·재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족 지원** 강화

* 가족센터 건립 : '15년에 시작 → ('20년) 70개 시·군·구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주 방화사건 등 사고·재난과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가족에게 정서지원 및 문제해결 과정 도움 제공

□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영유아 돌봄의 질을 높이고, 초등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학교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15년) 2,629개소(6.2%) → ('19년) 4,324개소(11.6%)

** ('17년말 33만→'22년 53만명), 39.7만명('20.2월) 대상 초등돌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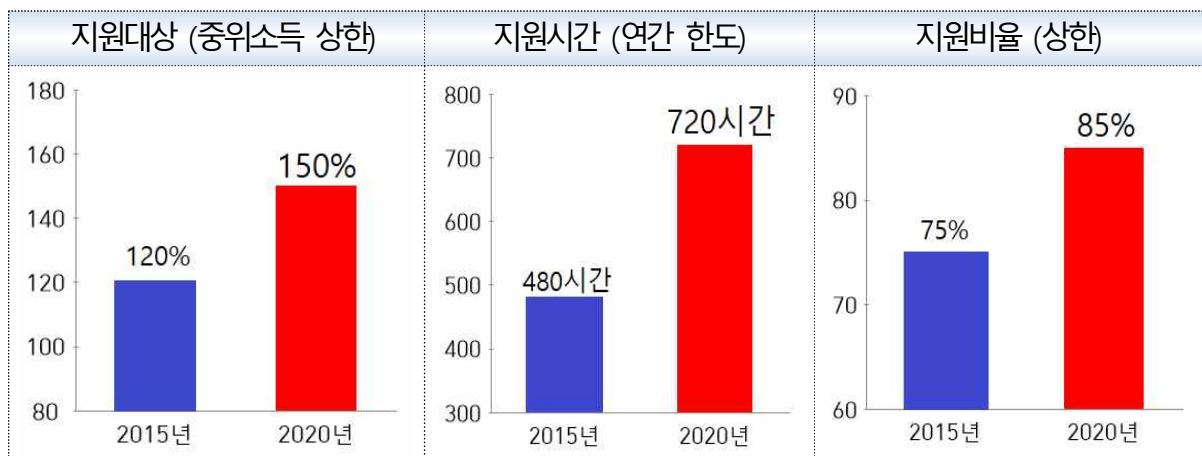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 ('15년)7.0%(467,752명) → ('19년)9.6%(772,206명)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수립('18.11) 및 선도사업 추진('19.6~) 등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및 돌보미 평가, 인·적성검사 도입 등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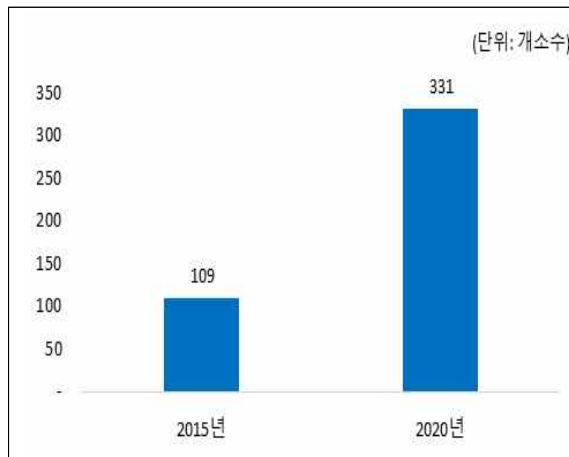
<아이돌봄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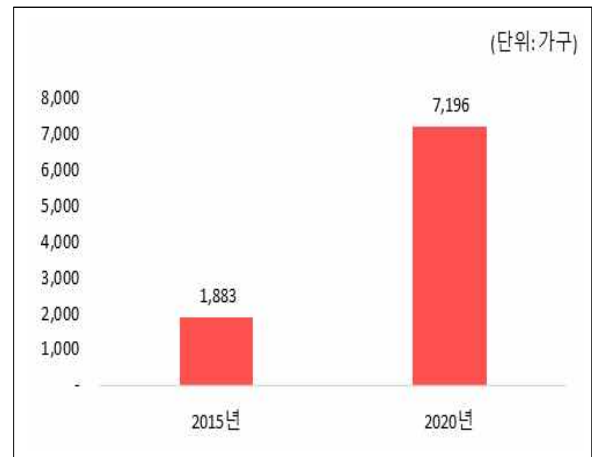
- 돌봄 사각지대 대응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적 돌봄 확대

*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사업 '20년 시범운영(33개 공동체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돌봄품앗이 가구수>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확충

- 남성 육아휴직 확대*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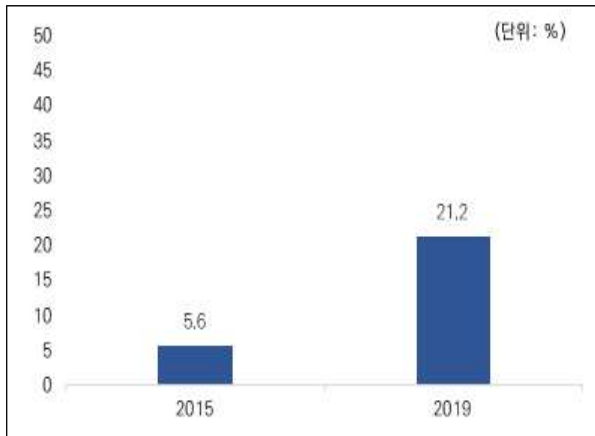
<주요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 ('1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16) 확대(1년→2년))
- ('16)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지원 확대(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18) 상한액 인상(150→200만원) → ('19)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 ('19)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월 50만원×3개월) 지급
- ('19) 연 10일 가족돌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일→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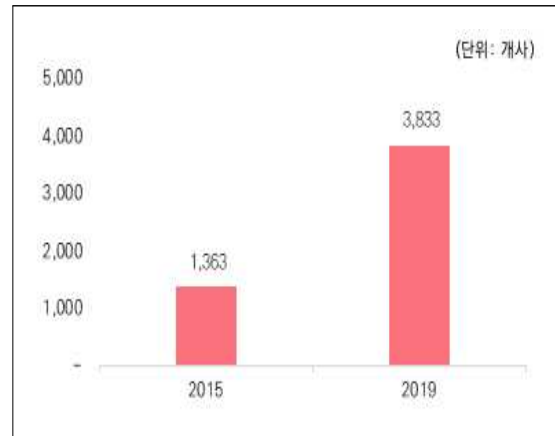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인증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17.3월), 성평등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선(여성임원 비율 항목 및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항목 강화 등)

<남성육아휴직 비율>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 1인 가구를 정책 대상에 포괄*하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1인가구 TF 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부처합동, '20)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 예방교육 의무화('16년)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 포함('18년)
- 유치원, 초·중고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18년)
- 미혼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복지급여(아동양육비, 건강보험 등) 지급 가능('20년)

- 다양한 가족 포용,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19년~), 언론매체 등에 대한 반편견 모니터링 및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 운영('20년) 등 신규 추진

* (가족다양성에 대한 동의 비율)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89.2%,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86.7%,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67.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 한계 및 향후과제

□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등 제도와 인식의 근본적 변화 미흡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발굴·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 대상 확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한계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가족은 “혼인·혈연·입양” 중심으로 규정

▶ 가족 구성의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가족 유형별 지원 중심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낙인 우려

-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으나, 가족 유형별 부분적 지원 정책이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족을 배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 가족 유형별 선별적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확대 필요

□ 가족의 소규모화,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공적 돌봄의 대응 한계

- 공적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의 1차적 돌봄 책임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는 1인가구 등 다양한 정책수요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돌봄공백 문제 대응에 한계

▶ 가족 다양성 증가와 감염병 확산 등에 대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가족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미흡

- 일·가정 양립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사·돌봄 부담의 성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개선은 불충분

▶ 남녀 모두를 일과 돌봄의 주체로 설정한 정책적 접근 강화 필요

IV.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 가족 다양성 포용

-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 보장
- 비혼,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돌봄과 친밀성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1차적으로 책임지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가족의 정의 - 다양성 포용으로 변화>>

남녀가 자녀를 동반하여 평생 지속되는 법적이며 성적으로 배타적인 결혼 관계를 의미. 여기서 남자는 생계부양자이며 궁극적 권위를 가짐(Macklin, 1987)



의존성, 의무감, 사랑, 돌봄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구성된 집단 (Rothausan, 1999)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 (예: 동거 커플, 재혼 커플, 한부모 가족, 이미 자식이 있는 남녀의 재혼을 통해 이뤄진 복합 가족 등) 결혼에 기반한 가족과 동등하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U, 2011)

자료: Farrer, L. & Lay, W. eds(2011). *Spotlights on Contemporary Family Life*. Family Platform-Families in Europe Vol 2:14-18.

□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핵심 지원 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비혼, 1인가구, 노년기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정책으로 확장

- 재난, 감염병 등 가족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유연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고, 위기·취약가족의 조기 발굴·지원, 비대면 가족서비스 등 확대

□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

-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 인식 증가를 반영하여, ‘공동체로서의 가족 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 부양자, 돌봄자 등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세대·젠더 간 위계 구조 없는 민주적인 가족관계 구현을 위한 정책 확대 및 가족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돌봄 등 평등한 가족문화 지향
- 여성의 일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 강화
 - * ‘주로 일하는 남성·주로 돌보는 여성’을 전제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남녀 모두를 일과 돌봄의 주체로 설정한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전환

제4차 기본계획(“2025 세상모든가족함께”)은

- ▶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 ▶ ‘가족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 ▶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추진계획 마련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체계>



V. 정책 과제

1-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 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 ②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①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 ②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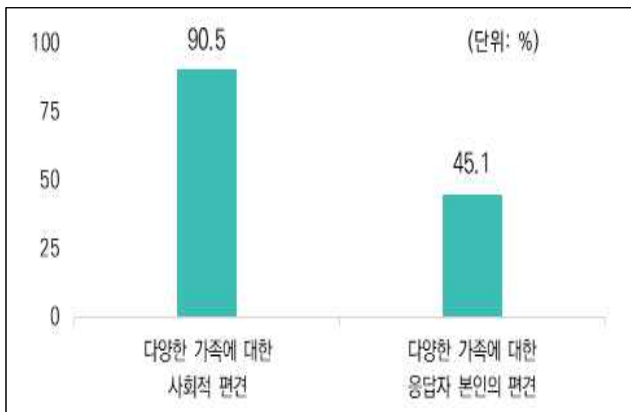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 ① 가족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 ②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 ③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 가족 구성이 다양해 지고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으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 상존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대체로 높지만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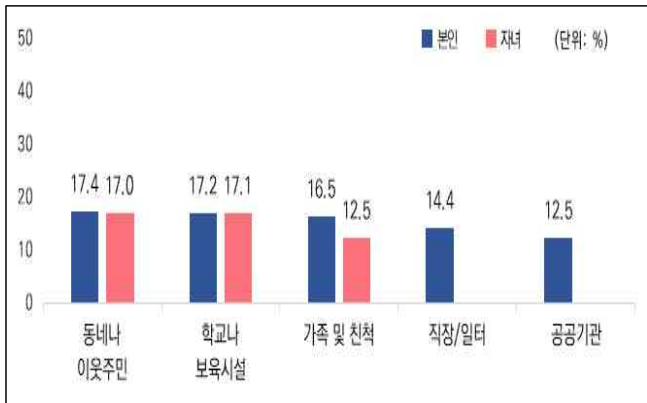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변수정외('1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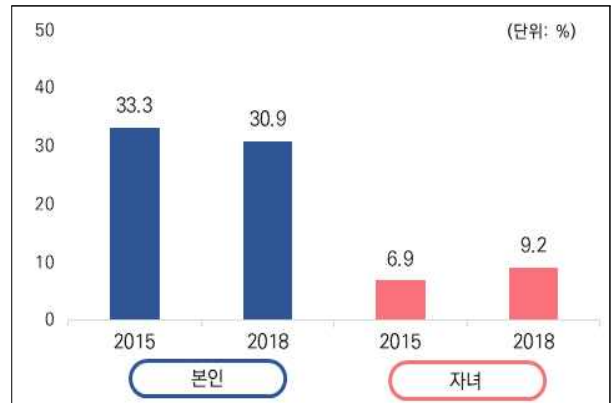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있음 90.5%('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결혼이민자·귀화자 차별 경험 : 본인 30.9%, 자녀 9.2%('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 한부모 가족의 약 16%가 차별 경험 ('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차별 경험>



여성가족부('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다문화 가족의 차별 경험>



여성가족부('15.'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법률혼·혈연중심의 경직되고 협소한 가족 개념 규정*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 중심으로 규정

** 아동학대 등으로 가족 정책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된 위탁가족, 동거·사실혼 부부, 특히 돌봄과 생활을 함께 하는 노년의 동거 부부 등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들이 발굴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법제 개정 필요

< 현행법상의 차별적인 내용(예시) >

- (자녀 성본 결정 부성우선 원칙) 미혼모와 자녀에게 차별적인 인식 야기
- (법률혼 부모 중심의 친자관계 법) '혼인중·혼인외 출생자' 용어는 차별적
- (출생등록 문제) 신고의무자의 아동 출생신고 누락시, 아동인권의 사각지대 발생
-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출생신고 시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아동은 미등록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노출

□ 가부장적 · 위계적 가족문화와 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폭력, 아동 학대 등 가족구성원 인권 침해 문제 등 지속

-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내 개인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나 가부장적 가족의례 · 문화* 등으로 세대간 남녀간 갈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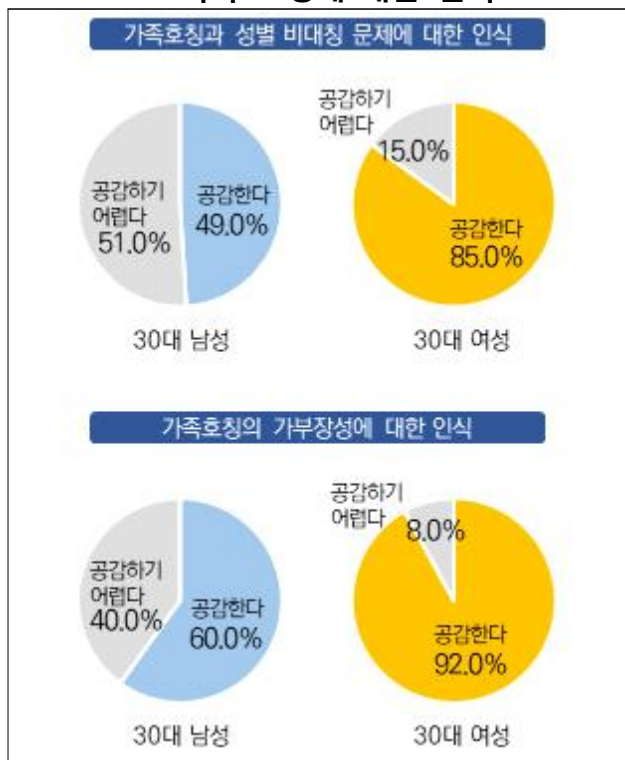
* '장례시 상주는 남성이 해야한다'에 동의 : 남성 51.9%, 여성 27.5%

< '장례시 상주는 남성' 동의 >



송효진외(18). 가부장적 가정의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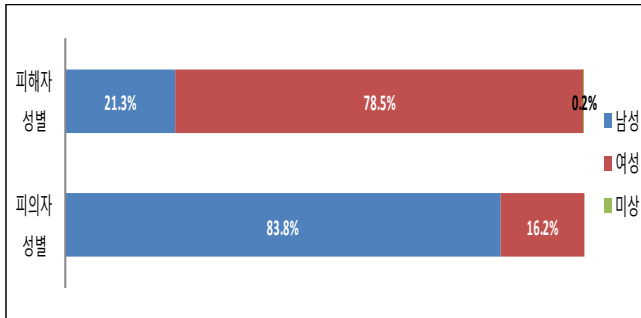
< 가족 호칭에 대한 인식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46호) 이론 속의 이론 기획: 가족호칭에 대한 인식조사(19.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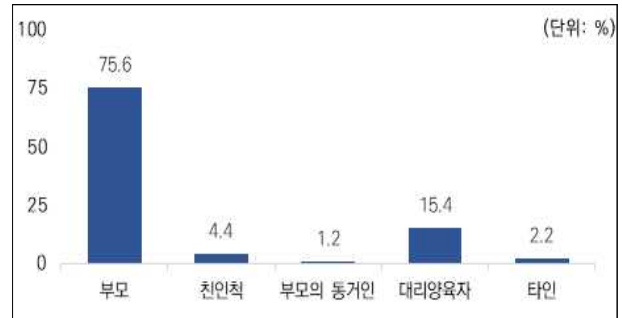
-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가정폭력, 부모의 권위적·부정적 양육태도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 발생
-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여성이 78.5%, 피의자 중 남성이 83.8%
- * 아동학대행위자: 부모 75.6%, 부모의 동거인 1.2%, 대리양육자 15.4%('19년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의자 성별 현황>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검찰청 공동 보도자료(대검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실태 분석 결과, '19.11.25.)

<아동학대 행위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8.31.) 재구성

2

정책 방향

□ 가족 구성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비혼·노년동거 등)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 마련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및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공무원 등 대상별 가족 다양성 교육 운영, 정부간행물 등에 대한 반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매체 홍보 등 가족다양성 인식 확산
- 성불평등한 가족의례·문화를 발굴·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 확립 지원
- 가족 내 위계에 기반한 폭력, 아동학대 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로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 보장

1-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 ▶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 개정을 통해 가족 범위 확대
- ▶ 대안적 가족공동체 등 가족 구성에 대한 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족유형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는 제도 발굴·정비(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자택 출산, 미혼부 자녀 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생신고 관련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출생신고 절차 지원

* 자택 출산의 경우, 모 외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있으면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가 가능(「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제5항, 대법원규칙 제38조의2)하나, 청소년미혼모 등의 경우 서면으로 첨부해야 하는 임신 진단 및 검진자료 확보 등 곤란

* 목격자·조력자가 없는 ‘나홀로 출산’인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출생신고 가능(「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 미혼부의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한 요건 확대·시행*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21.3.16 개정, '21.4.17 시행

【미혼부 자녀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한 요건 확대 제도개선 현황】

- ▶ **(기존)**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
- ▶ **(개선)** ①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②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 국가에서 출생신고와 병행 대조하여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신속한 출생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산망 구축
 - * 법적근거(가족관계 등록법 등), 시스템 체계(전산망 구축) 마련 등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검토
- 다양한 가족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개선 필요성 검토(법무부)
 - 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
 - * 현행 「민법」 제781조는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혼·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자녀들에게 차별적 인식 야기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대해 응답자의 73.1% 찬성(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 2020)

-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는 경우 종전 성(姓) 사용 원칙 확립(「민법」 제781조 제5항 개정)
 - * 현행 제도는 혼인외의 자녀가 부로부터 인지된 경우, 자녀 성 결정에 대해 부모 협의 불가시 인지한 부(父)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
- 자녀를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구별하여 차별적 인식을 야기하는 현행 친자 관계 법령 정비 필요성 검토(법무부, 법원행정처)
- 현행 「민법」 상 혼중자·혼외자 구분과 출생신고서 표기에서의 구분(「가족관계등록법」) 등 차별 요소 해소
 - *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9%가 찬성(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 2020)

□ 가족의 개념 확대 등 법령 제·개정(여성가족부, 법무부)

-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여성가족부)
 -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05)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 필요
 - 가족의 정의(법 제3조)를 혼인·혈연·입양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 신설 등
 -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의 ‘가족’ 정의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민법」 상 가족의 범위 규정(법 제779조) 개정 필요성 검토(법무부)
 - 가족 관련 개별법에 각 제도의 취지에 맞는 가족 범위 규정 마련
 - *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9.7% 동의(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 2020)

- * 혼인·혈연 외의 가족 ;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등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칭)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법무부)
 - 혼인여부,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 차별의 구체 등 명문화
 -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표명('20.6.30.)

2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생활영역에서 혼인·혈연가족 위주의 관행·문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겪는 불편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논의 추진(여성가족부)
 - *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TF 구성·운영 검토
-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 추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인 및 관련 법·윤리·의학·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 논의
 -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사항*, 정자 공여자의 지위 및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 *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21.상반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개정 필요성 검토

□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활용 지원(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언·신탁제도 등 발굴·홍보(여성가족부, 법무부)

- 재산 등 권리관계 명시, 분쟁해결 방안 등 안내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 자율적인 재산약정 계약서, 유언장 작성, 유언대용신탁* 등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추진

*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망 후 재산을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제도(신탁법 제59조)

- 대안적 가족 공동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의 유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법상 유언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검토 및 논의 추진(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법률혼·혈연 이외의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에 대해 가족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관계의 정의 및 권리보호의 내용, 당사자 간 관계 성립과 해소, 인적·재산적 효력, 관계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가족돌봄지원 제도, 피부양자·유족범위 등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하는 가족 관계를 포괄하도록 중장기적 제도 개선 검토 및 논의

* 현행 유족급여·보상 등 관련 각종 개별 법률(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피부양자·유족 범위를 ‘사실혼’ 관계까지 보호하며, 공공 주거 지원 관련 법령 및 정책(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상의 각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서 ‘법률혼’ 중심으로 규정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등 대상별 교육 운영, 대중매체·정부간행물 등에 대한 반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홍보 강화
- ▷ 평등한 가족의례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교육·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1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 가족 다양성 교육 운영 체계 구축 및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차별 감수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시설 종사자, 공무원, 보육교사, 부모 등) 교육 추진방안 마련 및 확대(여성가족부)
 - 교재·영상자료 등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운영 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및 단계적 확대
 - *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 다양성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차별표현 금지 근거 마련(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단계적 의무화 추진
 -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등 금지 관련 조항 신설

□ 가족 다양성 관점의 반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홍보 활성화(여성가족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 정부·공공기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 대한 가족 다양성 관점에서의 반편견 모니터링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정부·공공기관 간행물 등에서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
 - *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 제작 시 가족다양성 및·다문화 감수성 관점 컨설팅 후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등 추진
 - 대중매체에서 다양한 가족 차별 사례를 발굴·개선, 미디어 관계자 및 시청자 등에 공유·확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미디어 관련 학회, PD·방송작가 관련 기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등에 공유
-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민간단체와 연계, 가족다양성을 주제로 한 협력사업 추진(여성가족부)
- 가족 다양성 관련 통계 구축 및 국민 수용도 측정을 위한 정기적 조사 실시(여성가족부, 통계청)
 -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 측정 및 변화 추이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 실시
 -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해 비혼동거 규모 파악 추진
 - 1인가구 형성 사유, 사회관계, 정책 수요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고, 부처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통계 발표 추진
- 다양한 가족의 삶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국민참여형 캠페인 및 매체 홍보 활성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공익광고 및 방송 제작, 언어생활 개선 및 각종 콘텐츠 공모전 등 추진

2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 성평등한 가족의례 및 문화 확산(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의례에서의 성불평등 사례 발굴과 개선(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부장적 가족의례(장례, 제사, 명절 문화 등) 관련 사례 수집, 성평등 가족의례 사례공모 등을 통하여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개선방안 모색
- * 남성의 장례 상주 역할 관습 여전, 94.5% “주로 남성이 상주역할” (송효진 외. 2019.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 “자손이 내 제사 지내길 바란다” 男 16.7%, 女 2.4% (한국 노총, 추석명절 연휴 실태조사 2019.)

○ 성별 비대칭적·위계적 가족호칭 개선 캠페인 실시(여성가족부)

- 가부장적 가족 호칭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및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 확산
- * 가정의 달, 명절 등 계기 홍보·캠페인 추진

□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 채널 개설 등을 통해 일상적 가족 교육 활성화
- * (프로그램 내용) 평등한 가족관계, 평등한 가족내 역할 수행 등

○ 성별·세대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청년·노년층 등 세대 관계 이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기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등 세대 이해 제고를 위한 함께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확산 지원(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교육현장 및 일상생활 속 활용도가 높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 ▶ 다양한 가족 내의 폭력 피해를 포괄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가족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 ▶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 → 가해자 분리 등 현장 대응 →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① 가족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 가족다양성을 반영하는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법무부, 여성가족부)

- 법률혼·사실혼이 아닌 다양한 가족 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포괄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의 중장기적 검토
 - 현행법에서 가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비혼 동거 등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에 대하여도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검토

□ 가족 내 폭력·학대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법무부)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개정
 -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의 대상으로 오인하거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징계권’(「민법」 제915조) 삭제(‘21.1.26)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개선 추진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분석 및 검토
 - 가정폭력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제한되도록 제도 개선 검토

②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 여성긴급전화(1366) 및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활용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지원 제공 강화(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 중단 등 폭력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한 발생

- 지역단위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운영(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 등) 협의체를 통한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조치**실효화, 신고의무자 전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강화, 불이행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5개 직군으로 아동학대범죄 인지시 신고의무화,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 신고의무자 보호조치 : 신고자 공개 및 보도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62조의2), 신고자 인적사항 미기재(「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등

-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학교의 관찰·상담 기능 강화

* 등교수업 시 학생의 외상흔적, 영양상태 등 관찰·상담 실시 및 원격수업 시 유선·온라인 등으로 출결, 건강상태 확인 및 생활지도 실시

- 지역사회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동주민센터, 이장, 통장 등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례 안내문 배포 및 신고 독려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현장 대응력 제고(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시 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경찰청, 보건복지부)
 -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 행위 제지, 피·가해자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실질적 적용 강화
 - 피해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21.3월 시행)
 - * 응급조치 기준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현장 작동을 위한 공동업무수행 지침 개정·배포 추진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대응 역량 제고(경찰청, 보건복지부)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 가정폭력 사건 현장 조치를 위한 위험성 조사표 활용, 아동학대 관련 사항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활용
 -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학대 여부 판단 위한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도입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출동·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의 상호 동행 요청, 현장 동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추진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4(사법경찰 관리의 현장 출동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폭력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 구조 및 정서·심리지원 강화
 - * 자살, 폭력 등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역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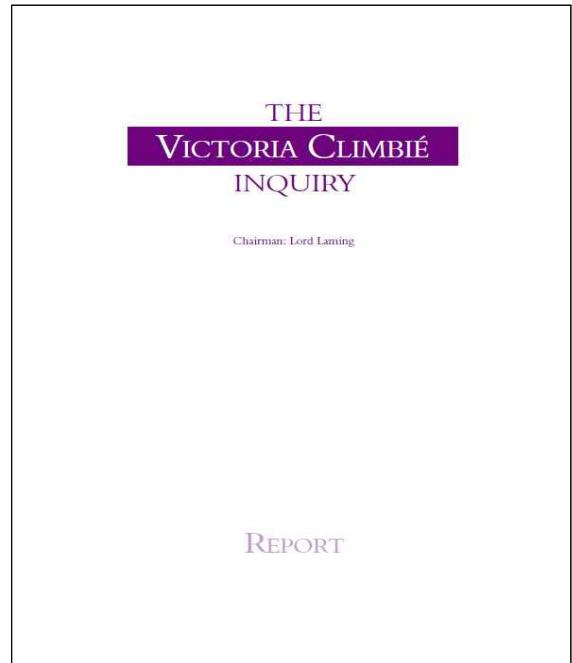
- 사건에 대한 정밀한 진상조사와 이에 근거한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및 환류*

* 아동학대사건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가정폭력방지 대책은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에서, 각각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환류

** 아동학대 중대 사망사건의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내 사망사건분석팀 신설 등 추진

<클림비 보고서(영국)>

- 2000년 '클림비'라는 여아가 아동학대로 사망
- 이후 영국정부가 진상조사단을 꾸려 2년간 진상조사를 실시, 클림비 보고서 발간(100여개의 정책제안 수록)
- 영국의회는 아동법을 전면 개정(Children Act 2004)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3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가정폭력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평가, 운영 내실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상담·서비스연계 등 기능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독립 및 안정,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설치 확대 검토(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아동학대 발생 가족에 대한 개입 강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양육환경 위험도가 높은 아동의 가구에 대한 사전개입 확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위험이 발견된 아동*에 대하여 가정방문 등 취약위기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과 연계 운영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영유아·학생 건강검진, 보건소의 고위험(산모우울, 청소년산모, 약물·알콜중독 등)가구 발굴, 유관기관을 통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대상 가구 발견
- 미성년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보건복지부)
 - 친권 불행사 등으로 보호아동 복리 훼손 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친권 상실, 제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학대 사건 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사례관리 시행(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관련 제재 규정 신설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부터 예비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결혼중개업법) 근거 마련(여성가족부)
 - *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처벌 강화 및 불법 광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인권보호 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 운영기관 : ('20) 32개소 → ('21) 228개소
- 이주여성 상담소('20년 9개소) 및 다국어 상담 확대 추진(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 ① 가족변화를 반영한 생계비 등 급여 확대
- ② 아동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③ 가족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 ①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
- ②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
- ④ 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 ①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반 조성
- ②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 ③ 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 가족유형별 소득 격차, 자녀 세대 기회의 불평등 지속,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가족의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하는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

- 가족 유형별 경제적 격차*는 자녀 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족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자녀세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요구 증대

* 가구유형별 빈곤율 : 한부모가족 35.3%, 전체 가구 12.6%, (통계청,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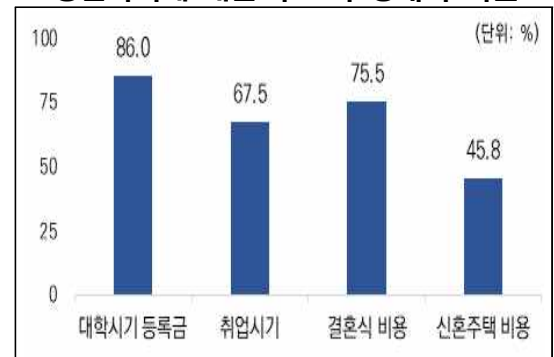
<가구유형별 빈곤율>



주) 빈곤-균등화중위 가처분소득 50%미만,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황정미 외(2019) 가족평등 수준 측정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결혼비용, 신혼주택 비용 등 부모 지원 높고, 지원여부에 따라 청년 자녀세대 격차 발생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주) 부분지원+전액지원 비율
자료: 김영란외(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지 이행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중하위 소득가구에 더욱 심각하게 작용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2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2%가 가구 소득 감소 경험, 2019년 기준 월평균가구소득이 100~300만원 미만인 경우 (36.5%)와 일반가구(32.9%)의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가구소득 수준별 소득감소 경험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경제변화조사

- 한편, 한부모가족은 “취약한” 정부지원 대상으로 인식되는 등 지원대상 가족의 유형화에 따른 사회적 편견 심화 우려 제기

* 한부모가족 관련 기사 : 지원, 임대 주택 등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대상 정책 관련 단어 사용 빈도 높아 낙인 효과 발생(김영란외, 2019. 한부모 인식개선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부모 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한 복합적 지원 강화 필요

- 비양육부·모의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지속적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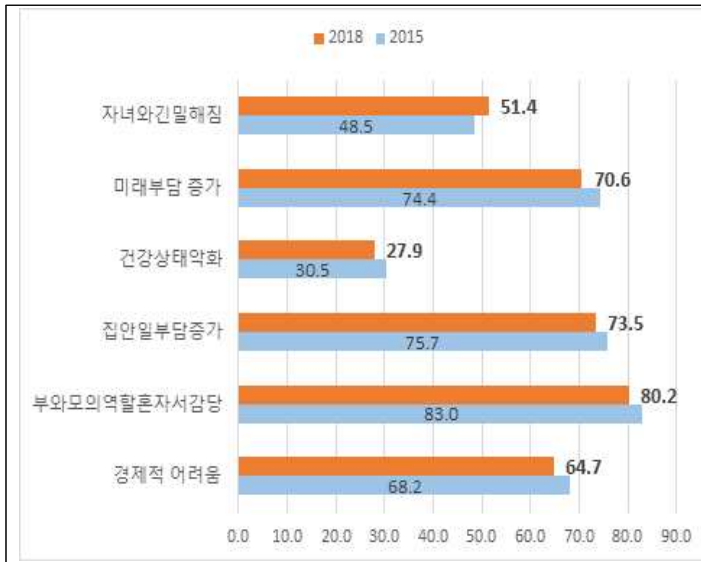
- 탈기초수급으로 자립한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 지원 및 자녀 교육비로,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구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

* '19년 아동양육비 인상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빈곤율 감소 효과 : 상대 빈곤율 68.1% → 62.9%(김은지외, 2019 한부모가족지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한부모가 된 이후 변화 1순위가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는 문제’로 자녀 양육과 아동의 성장을 위한 복합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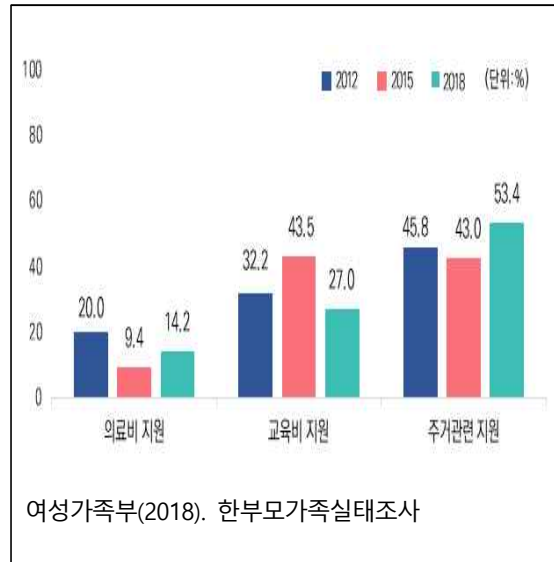
* 한부모가 된 이후 경험한 변화 :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 80.2% (2018년 한부모실태조사)

< 한부모가 된 이후 변화>



여성가족부(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탈기초수급 한부모가구 필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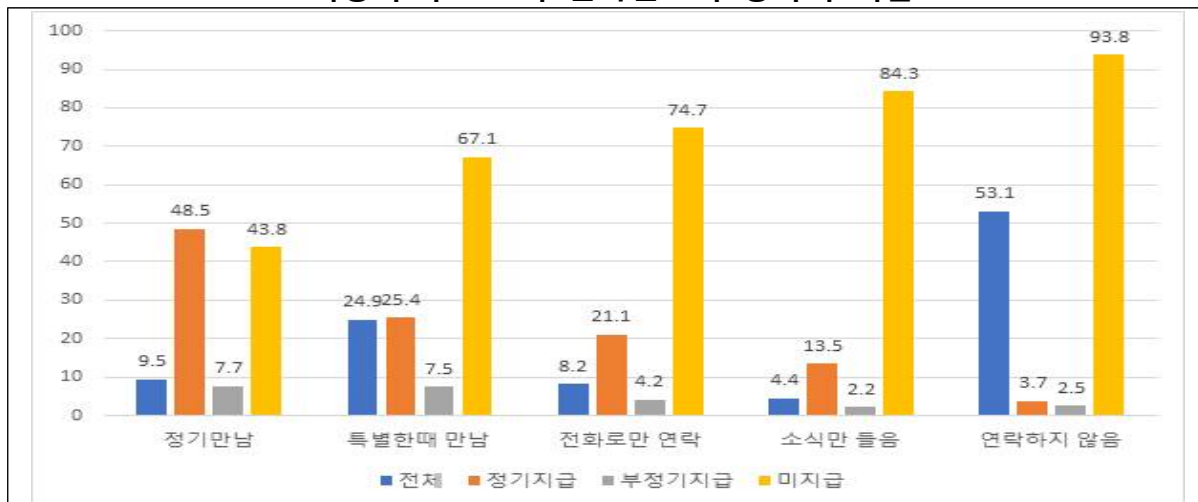


여성가족부(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연락빈도가 높고 관계가 좋을수록 양육비 지급 비율 높으므로, 이혼 후 안정적 자녀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비양육부·모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 양육비 정기지급 비율 : 정기만남 48.5%, 연락하지 않음 3.7%(박복순 외. 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한부모의 소득수준 낮을수록, 특히 최저 소득계층인 경우, 비양육부·모가 임시·일용직, 비취업인 경우 : 양육비 채권 소유 낮고,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단절 정도 크고, 양육비 정기지급 가능성과 이행 금액의 수준이 모두 낮음(박복순 외. 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비양육 부·모의 연락빈도와 양육비 지급>



박복순 외(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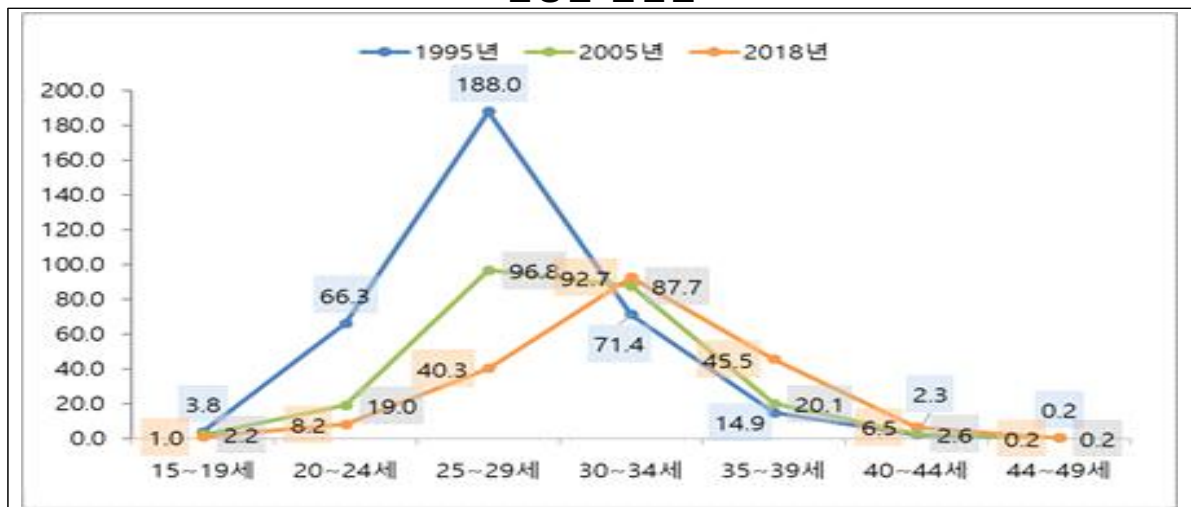
□ 결혼지연, 자녀출산 기피 등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던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가 변화하고 다각화 추세

- 무자녀 부부 등이 양육기 없이 노년기 부부로 진입하거나, 만혼과 늦은 출산으로 자녀양육기와 노년기가 중첩되는 등 가족주기 다각화
- 비혼, 이혼, 재혼 증가로 전 생애에 걸쳐 “1인 ↔ 2인 이상 가구” 넘나드는 사례 등 증가

* 연령별 출산율 : 출산 감소, 가장 많이 출산하는 연령 증가 ('95년) 25~29세 → '18년) 30~34세

* 결혼 지연(만혼화), 자녀출산 기피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한다’ 20대 동의 비율 낮아(20대 47.5%, 50대 77.9%, '20년 통계청 사회조사)

<연령별 출산율>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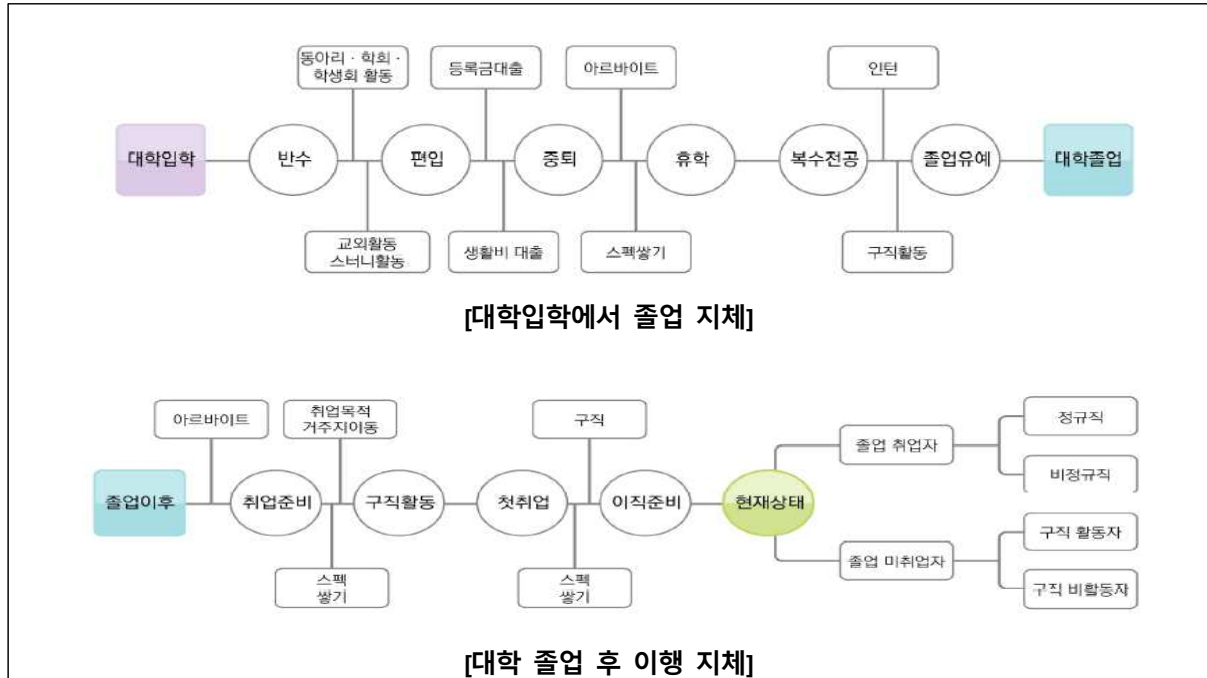
<결혼과 출산 시나리오>



김영란 외(2019). 저출산 사회 전환을 위한 가족다양성 포용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 청년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연 등으로 노년기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 연장, 손자녀 돌봄 기간 증가하는 등 가족 주기 변화

<청년세대의 이행 지체>



김지경 외(2016).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자녀 양육기 중심, 저소득한부모 등 특정 가족 형태에 집중한 가족 서비스는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 대응에 한계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통합을 추진 중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개소('21년 기준)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작	2014년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2004년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006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기능	- 가족관계 - 부모역할지원, 가족상담 등 - 가족돌봄 - 가족생활 -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 가족돌봄 - 가족교육 - 가족상담 - 가족문화 - 지역사회연계	- 가족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 등) - 성평등 인권 - 사회통합 - 상담 - 홍보 및 지원연계

- 취약·소외가족 선별적 지원, 공급자 중심 표준화된 서비스 전달로 가족 변화 대응과 국민 체감이 미흡하고, 프로그램 별 예산 지원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탄력적 운용 곤란

- 자녀 양육기 가족 중심의 가족문제 지원 접근에서 가족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충 필요

* 가족지원사업 자녀양육기(부부+자녀) 가족 이용 비중, 43.9%('18년)

2

정책 방향

□ 모든 가족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녀양육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속 확대
- 아동·청소년이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양육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한부모, 다문화 등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육 지원을 확대

□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복합적 가족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가족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 확대
- 특히, 재난·재해,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위기·취약가족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세대·이웃 간 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가족센터(생활SOC) 확대 추진

2-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 ▶ 가족 변화를 반영한 복지급여 확대 및 개편, 아동수당 등 아동양육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단계적 확대 검토
- ▶ 청소년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가족특성별 자립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가구 중심의 주거지원 강화

① 가족 변화를 반영한 생계비 등 급여 확대

□ 가족 유형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개선(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한부모가구부터('21년) 단계적 폐지(보건복지부)
- 가족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분석 및 평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 (사례) 한부모가족 특성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생계급여 병급 허용('21.4~)

□ 긴급복지 급여 확대 및 가족변화를 반영한 지급단위 개선 검토(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긴급복지 생계지원 규모 확대(보건복지부)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현금급여 선지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폭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실직, 주소득자와 이혼 등), 지원금액 474,600원(1인가구), 1,266,900원(4인가구) 수준

- 가족다양성, 개인화 등 가족변화를 반영한 지급단위 기준 등 평가·분석 연구 추진(여성가족부)

2 아동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아동 관련 수당 등 자녀양육 가족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제도 목적(양육부담 경감, 국가책임 확대, 아동권리 증진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 사업 성과평가·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 확대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OECD 32개국 중 15세 이상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9개국임. 연령확대는 「아동수당법」 개정사항

- 만0~1세의 집중 돌봄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등화 된 지원을 통합한 영아수당* 도입 추진(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도입('18년), 영아수당 도입('22년 예정) 등에 따라 양육수당 등 기존 아동 관련 수당 제도의 합리적 확대 방안 검토

- 정부, 지자체의 각종 아동 관련 수당, 급여 등이 가족의 돌봄 부담 및 성역할 분담 등에 미치는 통합적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추진(여성가족부)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제도 내실화 및 확대 여부 등 검토(보건복지부)

- 크레딧 인정 기간의 적정성, 수급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재 둘째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 추가 인정, 현재 주로 남성이 수급하고 있으며 여성의 수급율은 1.6%에 불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한부모 가족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 검토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급 등 지원 확대('21.5월~)
 -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24세→만34세로 확대('21.5월~)
 -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20년 연 5.41만원)를 교육급여 학용품비(연 8.3만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21년~)

□ 가족특성별 자립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확대 및 내실화 추진(여성가족부)
 - 실태조사 등을 거쳐 청소년한부모의 정책욕구를 반영, 초기 상담, 취업·학업·돌봄 및 주거 지원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결혼이민자 취업 등 자립 여건 확보를 위한 지원(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강화
 - * 결혼이민자 취업기초소양 교육, 구직자 발굴시 워크넷 등록 및 새일센터 연계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대상 일 경험 지원,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국민취업지원제도('21.1.1. 시행)' 등 직업훈련·취업 연계 지원 사업에 가족사유 반영(고용노동부)
 - 직업 훈련 과정 중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한 훈련 불참(예 : 자녀 입원 등)시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

③ 가족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대상 및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지역사회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 마련(여성가족부)
 - 탈시설화 추세 반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선방안 및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 지원 방안 모색
 - *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방안(분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
-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 대상자 확대(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 LH공사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한부모 가족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물량 확보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거지원 자격대상 소득 기준 완화(60%→100%) 및 임차보증금 단가 현실화
 - * 입주자가 근로활동으로 정기적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기준 60%를 초과할 수 있으며, 현 임차보증금 수준에서는 관리비(월세) 비중이 높아 경제적 부담
- 공공주택 입주자격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공급 추진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 검토
- 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지원사업 추진(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주택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지원 등

- * 한부모가족은 내집마련대출(보금자리론, 최대 3억원) 금리를 0.4%p 인하하고, 전세대출(최대 2억원) 보증료를 0.1%p 인하 적용중(주택금융공사)

< 주택자금대여 지원사업 >	
주택기금지원 (국토교통부)	• 무주택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이 주택구입 시 0.5%p 우대금리(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무주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이 전세 마련 경우 1.0%p 우대금리 제공(버팀목전세자금)
수요자자금지원 (금융위원회)	• 무주택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이 주택 구입 시 최대 3억 원까지 0.4%p 우대금리 제공(보금자리론) •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전세 마련 시 최대 2억 원까지 0.1%p 보증료 우대 제공(전세자금보증)

□ 취약계층 가족 주거지원 확대(국토교통부, 환경부)

-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국토교통부)
 -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임대 주택(60~85m²) 공급, 취약아동 가구 등에 공공임대 우선 지원
 - 1인가구 증가, 가족 소규모화 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논의
- 환경오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가구 대상 환경복지서비스 제공(환경부)
 - 환경성질환 유발인자인 환경유해물질 진단, 예방방법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벽체 및 바닥 등 교체), 아동 의료지원(환경성질환 진료 병원)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이혼 전·후 상담 및 비양육 부·모-자녀 간 지속적 관계맺음 등 지원을 강화
- ▷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종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의 재정비
- ▷ 다문화가족 자녀, 취약·위기아동·청소년 등의 균등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①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

□ 자녀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이혼 전·후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 이혼 전·후 자녀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강화(여성가족부)
 -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통해 이혼 전후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등 관련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법원행정처)
 - 양육비 관련 정보전달형 교육* 및 부·모간 양육비 관련 협의 사항 확인절차 강화, 조정조치 명령(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등) 활성화 등
- *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지급계획서 작성, 양육비 미지급시 집행방법 및 법률구조 절차, 채무자가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

▶ 양육책임 및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및 합의없이 혼인관계 해소 비율이 높고, 법원의 주요 판결도 자녀의 복리에 대한 고려 미흡 ⇒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 부·모의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실천 및 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개입 필요

- 한부모·조손가족 등 아동청소년의 학습·정서 등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수행기관* 및 지원 대상 지속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손)자녀 학습·정서지원, (조)부모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 교육 및 자조 모임·가족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 * ('20년) 79개소,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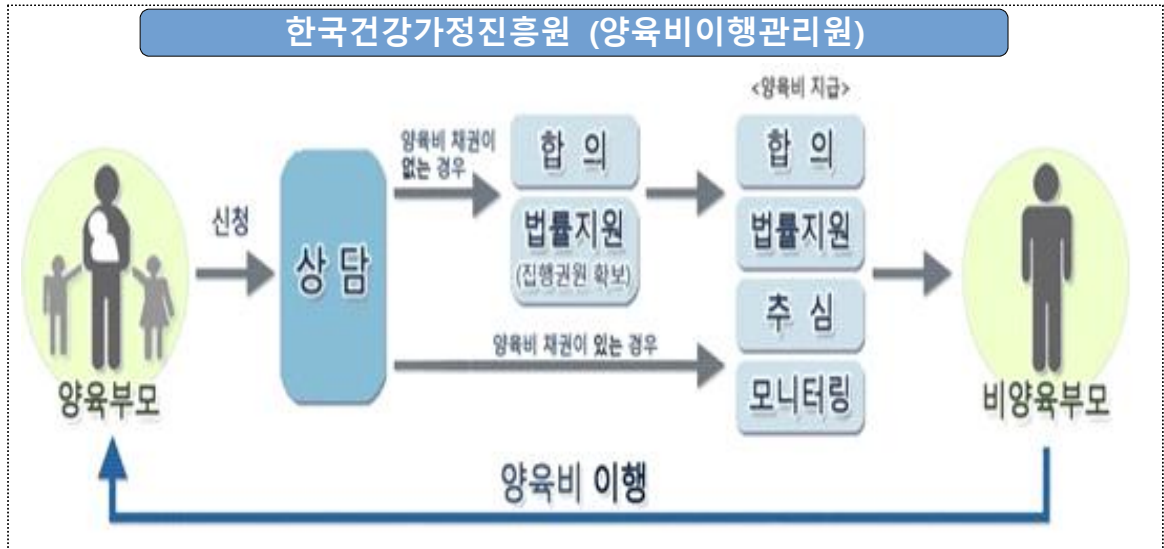
□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 만남·교류 확보 및 지원(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권리 보호 방안 검토(법무부, 법원행정처)
 - 면접교섭권의 실효적 이행확보 및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필요성 검토
 - * 현재는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리 제한
-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맺음 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만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과 주기적 면접 교섭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성장환경 지원
 - *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간 만남, 서신교환, 주말·방학 함께 시간보내기 등
 -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해 면접교섭 프로그램 전국 확산

②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 양육 한부모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 미성년 자녀가 성년 도달까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등 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수행(「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등 양육비 이행관리원 기능 강화

- 양육비 채무자 동의 하에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나 동의율*이 저조하여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 양육비채무자 동의율('15.3~20.12) : 4.5%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100%이하 또는 125%이하로 확대 검토

□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감치신청 요건 완화(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 현행 이행명령은 3기(통상 3개월) 미이행시 감치처분 신청이 가능한데 일시금 지급명령과 같이 30일 미이행 시 감치처분이 가능하도록 기간 단축

○ 감치 명령 등 제도개선(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 감치명령 후 양육비채무를 불이행하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1.7.13. 시행)
-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
 - * 현행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로 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허위주소 기재나 법원의 송달서류 미수령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기피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양육비 채무 '일부' 이행시*에도 감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성 검토
 - * 현행 재판부에 따라 양육비 채무 중 '일부'지급 시 감치명령 요건 불충족 해석 가능
 - ** 감치명령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함(「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양육비 청구에 대해 송달 방법 특례 조항 신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기재 주소로 곧바로 발송하여 송달로 간주
- 주민등록표 기재주소가 말소된 경우에도 별도 송달 없이 공시 송달이 가능토록 개선
 - * 양육비 법률지원 신청자 중 채무자 주소 인지 비율 36.2% 불과(박복순외, 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연구)
 - (유사사례) 금융기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송달 특례 조항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18.3.27 공포, '18.9.28 시행)
- 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채권확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18.12.24. 공포, '19.6.25. 시행)
- 감치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19.8.2. 공포·시행)
-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20.6.9. 공포, '21. 6.10. 시행)
- 감치명령 후 양육비채무를 불이행하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20.6.9. 공포, '21.6.10. 시행)

○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아동 보호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필요성 등 검토 (여성가족부)

* 필요시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효과 등의 분석·평가를 거쳐 대지급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추진

※ '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는 ①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또는 대지급제 도입(48.5%), ②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③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0.1%) 순임

○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감안하여 자녀 양육 의무의 불이행시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민법상 상속 제도 등 검토(법무부)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역량 개발 등 맞춤형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방문교육(자녀생활 지원, 부모교육),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영유아기·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지원

- 이중언어 인재 지속 발굴 및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 인재 대상 취업정보 제공,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진출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 컨설팅, 진학·진로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 및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교육부)

-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종합서비스 지원 모델 마련 및 확산 검토(여성가족부)
-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지원 확대(교육부)
 - 입학·편입학 예정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 준비 교육인 '징검다리 과정' 운영 학교 확대
 - 중도입국 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번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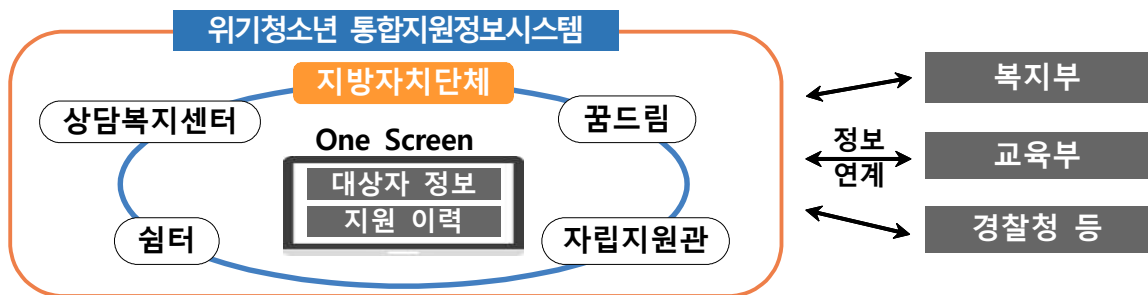
□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교육부, 지방자치단체)

- 교원의 다문화 교육역량 강화 등 학교 내 다문화 수용성 제고(교육부)
 - 모든 학교 대상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교육활동 실시 권고, 정책 학교(661교)를 통한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 예비교원 양성 시 및 교원 교육 시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 콘텐츠 및 연수과정 다양화
- 외국인 밀집지역의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 협업체계 마련(교육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학생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학교의 교육력 제고 추진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연계사업 운영

4 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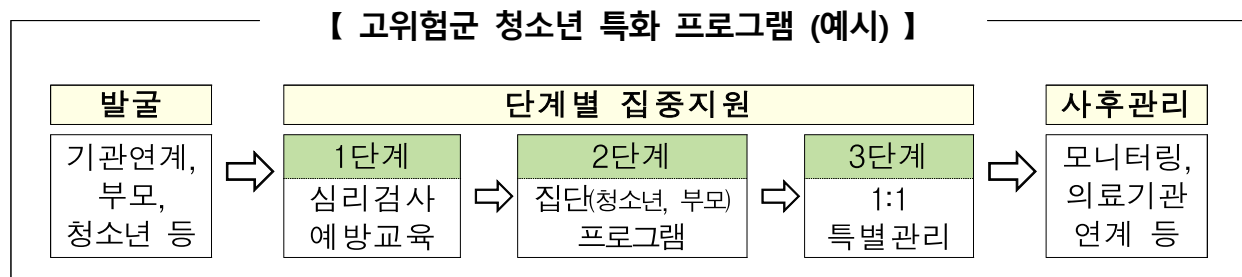
□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 체계 강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위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 간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 대응력 강화(여성가족부)

- 자살·자해,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트라우마 심리지원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전문성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확대 추진('20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원가정 분리 아동·청소년의 가족기능 지원을 위하여 가정위탁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제공(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방임 등의 이유로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청소년 대상 치료 및 부모 자녀 관계 향상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사업: ('20년) 4개소 → ('21년) 8개소 → 단계적 확대 추진

-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 확대 추진(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취약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립 활동비 지원 (연 50만원 이내) 및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학업중단 이후 공적 지원체제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자동화 추진
 -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진로 지원을 위해 진로탐색, 설계, 직업체험, 전문직업훈련에 이르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및 자녀양육 등 지원 방안 마련(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청소년 부모 통계 확보 방안 마련 및 실태와 정책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추진(여성가족부)
-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 * 만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21년)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학업 지속 및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여성가족부, 교육부)
 - 청소년 부모의 학업 지속 및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원가족(부모 등)과의 관계 관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 학생 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등 학업 유지 지원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가족센터(생활soc) 확대
- ▶ 지역센터의 교육, 상담 기능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 제고
- ▶ 지역사회 위기·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원 확대

1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반 조성

□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가족센터로 전환(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의 가족 특성을 반영, 돌봄, 교육·상담, 세대·가족 간 소통 등 자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가족 서비스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 마련



- 가족서비스 관련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구성·운영(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중심으로 지역의 가족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현황 파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지역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한 가족센터(생활SOC) 설치 및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상담·교육·돌봄 등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이웃간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생활soc) 단계적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센터 건립 계획수립, 설계, 공사, 운영 등 건립 단계별 컨설팅 지원(여성가족부)

* '20년 70개소 → '21년 97개소(착수연도 누계) → 단계적 확대



- 지역 맞춤형, 주민 참여형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지방자치단체)

- 가족센터 공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관계 공무원, 건축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 수렴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신규공간에 대한 활용도 제고

○ 가족서비스 공간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여성가족부)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 모델을 발굴, 공유 및 확산

〈가족센터 모델〉



□ 가족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여성가족부)

○ 가족서비스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 마련

- 자격증명서 발급·관리, 중장기적으로 자격검정, 연수기준 마련, 자격관리 강화 추진

* 건강가정기본법령 개정 및 반영

○ 가족서비스 종사자 비대면(온라인) 교육 확대 및 전담인력(현행. 건강가정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 가족서비스 사업·프로그램 운영관리, 가족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센터 업무 매뉴얼 마련 및 평가 강화

□ 시·도 가족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가족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구성
 -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 마련
- 가족정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과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 가족상담전화 확대 및 기능 강화(여성가족부)

- 한부모, 양육비 이행, 임신·출산 갈등 상담을 통합한 가족상담 전화(1644-6621)*의 운영 및 기능 확대

* 한부모, 양육비 이행 상담 + 임신·출산갈등 상담('19. 9. ~) → 가족심리·정서 상담('20.5. ~)

<가족상담전화 개요>

구분	양육비상담	한부모상담	임신출산갈등상담	심리·정서상담
지원 내용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양육지원(면접교섭) -추심지원 -사건진행사항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미혼모부 초기 상담 - 한부모지원서비스 - 정부 지원 자격 안내 - 출산 및 양육 - 시설 안내 - 기관 연계 등	- 초기 정보 제공 - 심리·정서 지원 - 기관 연계 등	- 심리·정서 상담 - 코로나 대응 정부 지원 및 가족 서비스 종합 정보 제공 등
이용 시간	평일 9~18시	365일 8~22시	365일 24시간	365일 8~22시

- 디지털 기반 비대면 e-상담채널 활성화 및 온라인 상담, 지역 센터와 연계한 심층상담 등 상담의 접근성과 질 제고

* ('20년) 문자상담 → ('21년) 채팅, 챗봇상담 → ('22년) 화상상담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등을 통한 다국어 가족상담 강화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13개 언어) 지원

□ 가족교육·상담 등 서비스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의 가족 상담 서비스 확대

-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에 대한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이혼 전·후, 부부간·부모간 가족관계, 가족갈등 및 자녀양육 등 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

* 가족상담전담인력 : 44명('19) → 254명('20) → 306명('21) → 단계적 확대 배치

- 가족관계 개선, 가족내 의사소통 및 폭력 예방 등을 위한 가족 교육 확대

* 부모·부부 역할, 이혼전·후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향상 등

-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양기관 간 협의체 구축, 입양가족(부모) 교육·상담 지원

* 입양기관 사후지원 종료(1년) 입양가족 대상 부모교육·상담 지원

□ 가족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족교육, 상담 등 가족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자에게 가족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20.8월~)/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0.7월)

-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가족서비스 홍보 확대

○ ICT 활용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서비스 전환*을 위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여성가족부)

* 센터 이용자 대상 비대면서비스 수요조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년) 등 활용

○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적 가족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검토(여성가족부)

- 가족서비스 빅데이터 구축, 정부24 등과 연계한 비대면 상담 활성화

* 이용자 프로그램 검색, 정보활용 및 실적관리까지 원스톱 운영

-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등 QR코드를 활용한 안전한 입출입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③ 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미혼모·부, 한부모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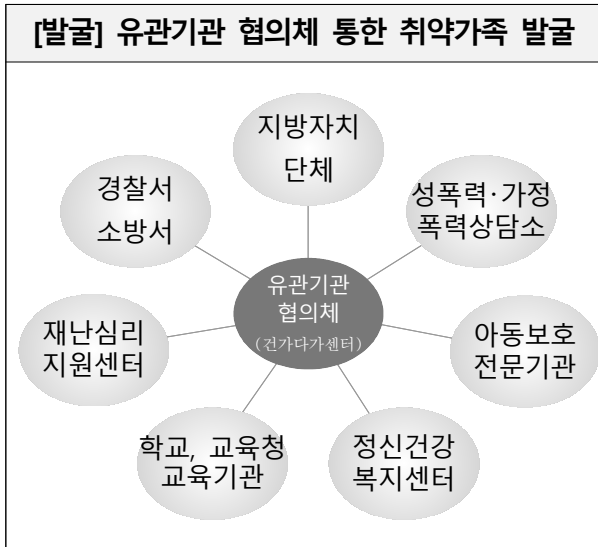
-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 및 자조 모임 활성화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지역사회 경험이 많은 한부모지원단체 등을 활용하여 한부모가족 당사자와의 1:1 연계를 통한 사회적·심리적 공감대 형성 및 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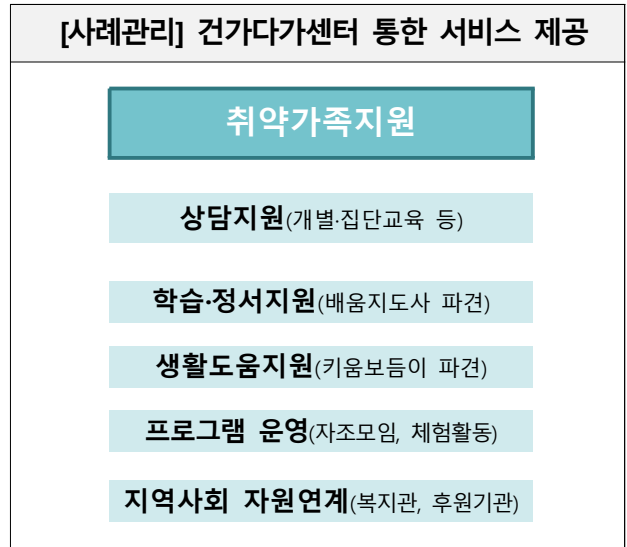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 한부모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혼모 등 취약가족 발굴 및 초기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의 체류 자격, 복지 수급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20년, 174명) 단계적 확대
-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내실화 및 관계부처 협업 강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등 경감
 -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양육 실태 파악 연구 등을 통해 서비스 수요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장애부모 맞춤형 양육 지원 방안 마련
 - * 장애 부모 교육 프로그램, 자녀양육코칭 서비스 등

□ **취약·위기가족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저소득가구, 위기상황에 따른 나홀로 아동 등 지역사회 취약 가족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추진(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취약·위기가족을 발굴하여 지자체에서 사례관리 중인 위기가구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 * 지자체, 학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한 취약가족 발굴, 사례관리, 상담·교육, 자원연계 등 서비스 제공



연
계
⇒
지
원



- 감염병 확산,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 및 상황해결 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위기가족 긴급 지원 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20년 79개소) 단계적 확대
 - *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가족 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등 제공
- 위기 가족 긴급 지원 시 관련 기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및 교육훈련 실시(여성가족부)
 - * 코로나19 감염병, 헝가리유람선('19.5), 이천 물류 화재사고('20.5)와 같이 피해규모가 큰 재난사고 발생시 위기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관계 기관의 연계강화를 통한 효율적 협력과 지원 강화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 ①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 ② 지역공동체 기반 일상 돌봄 지원

3-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 ② 재난·재해 시 돌봄공백 대응

3-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 ①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 ②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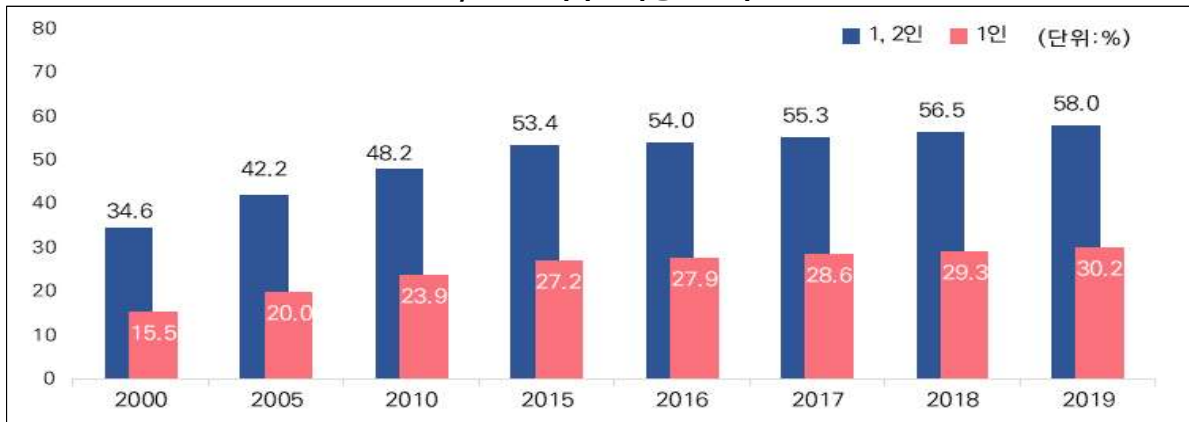
□ 가족 변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돌봄 수요 발생

- 가구 규모 축소로 '15년 이후 가구원 수가 2인 이하인 가구가 절반을 넘어, '19년에는 전체 가구의 58.0% 차지

* 주된 가구 유형 :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5년) 1인(27.2%)

* 2047년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전체 가구의 72.3% 차지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장래가구추계)

<1, 2인 가구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총조사

- '15년 이후부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져 '19년에는 전체의 30.2%, 6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성별 비중은 상이(남성은 30대, 여성은 60세 이상)

<1인 가구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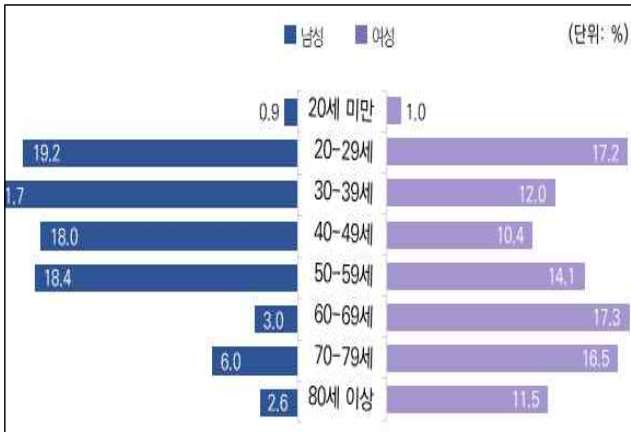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생활상 어려움) 남성은 식사, 여성은 주거 수리, (걱정요인) 남성은 외로움-식사, 여성은 안전-외로움으로, **성별·연령대별 돌봄 수요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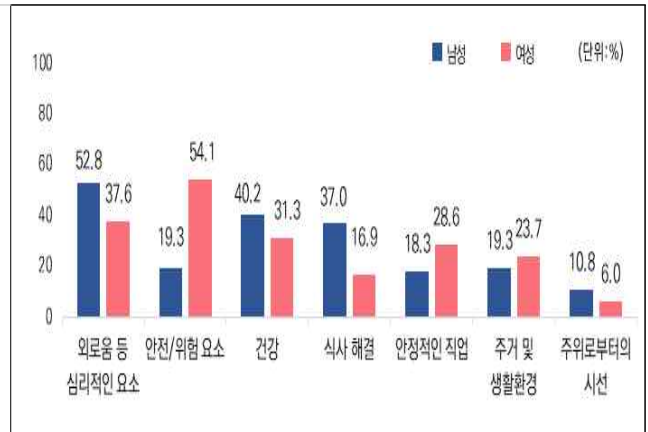
- * 생활상 어려움 : 남성 식사(43.8%)-청소(29.2%), 여성 주거수리(43.8%)-식사(30.0%)
- * 걱정요인 : 남성. 외로움(52.8%)-식사(40.2%) 여성. 안전(54.1%)-외로움(37.6%) / (2017.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한국의 1인가구 보고서)

<1인 가구 생활상 어려움>



주) 조사연령 20세 ~59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20). 한국의 1인가구 보고서

<1인 가구의 걱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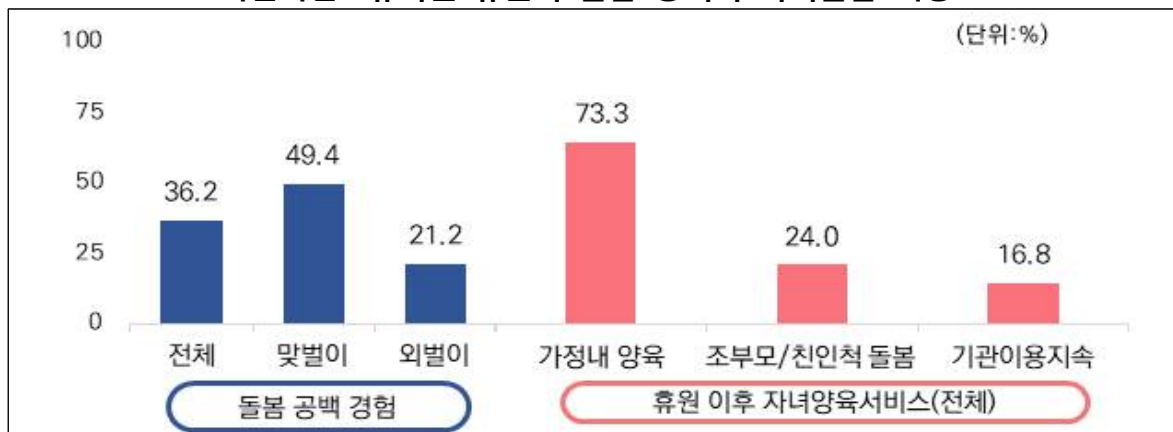


주) 조사연령 20세 ~59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7). 한국의 1인가구 보고서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라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돌봄 시설 및 인력 등의 안전성 확보 요구도 증대

- *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간 돌봄공백 '경험함' 36.2%, 맞벌이 49.4%, 외벌이 21.2%
- * 휴원 이후 양육서비스 이용 : 가정내 양육 73.3%, 기관이용 지속 비중 16.8%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시 돌봄 공백과 자녀돌봄 이용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4.14

□ 돌봄의 공공성, 품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 돌봄시설 및 서비스가 지속·확대되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체감은 미흡, 선호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여전히 불충분

* 아동돌봄 국공립 이용율('16년) : 0세 1.2%, 1-2세 7.2%, 3-5세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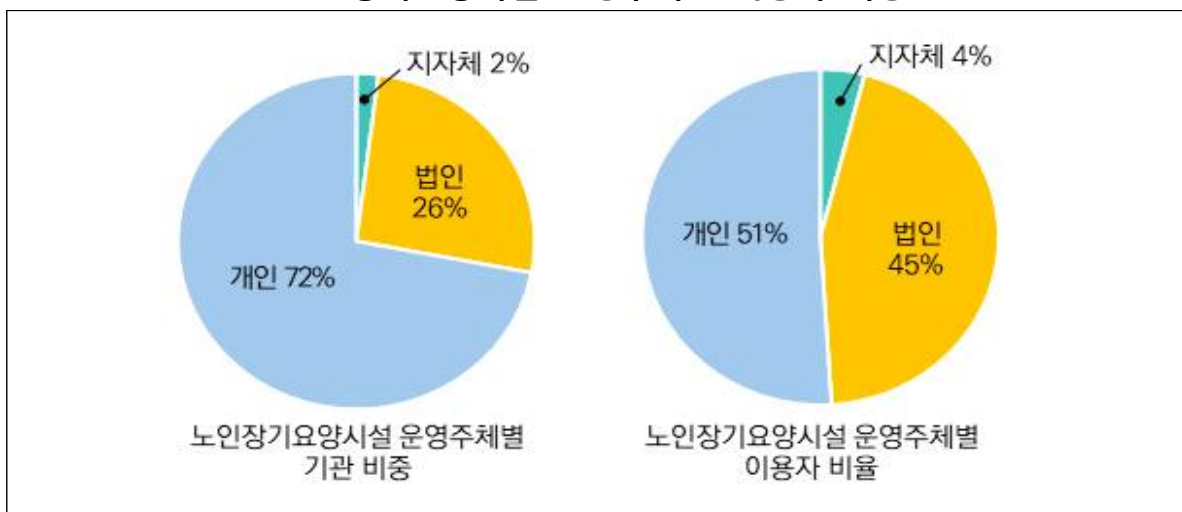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시설('16년) : 개인운영기관 72%, 개인운영기관 이용자 51%

<아동돌봄 국공립 이용율>



김은지 외(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자 비중>



김은지 외(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돌봄 종사자의 낮은 처우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개선 미흡 및 가족돌봄의 여성화 등과 상호 연결

<유급 돌봄노동 임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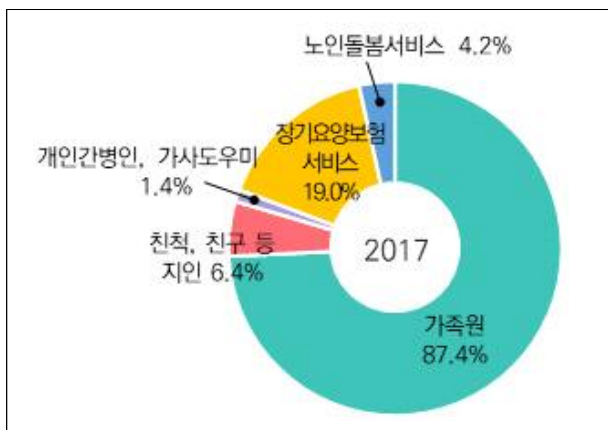


통계청(2019). 지역별 고용조사

* 돌봄종사자 92.6% 여성, 전체 취업자 시간당 임금의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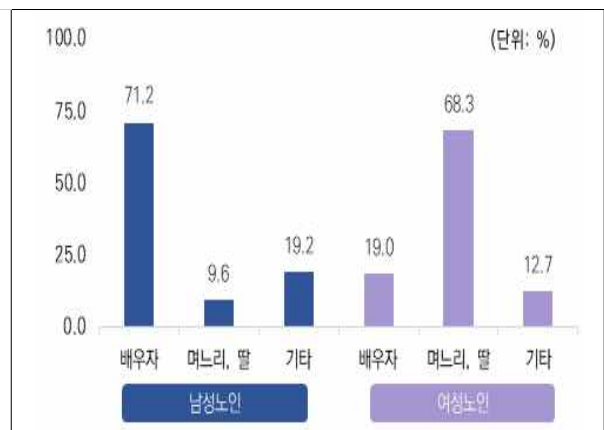
* 가족돌봄자 : (남성노인) 배우자 71.2%, (여성노인) 며느리·딸 68.3%

<노인 돌봄 주행위자>



보건복지부('17). 노인실태조사

<가족돌봄자 현황>



보건복지부(2017). 노인실태조사

2

정책 방향

□ 가족 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

- 마을 단위 자녀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한 지역공동체 중심 일상돌봄 활성화
-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등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 공적 돌봄 확충과 질 제고 등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

- 어린이집·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공적 돌봄 인프라 확충
-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가족돌봄 지원 등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 ▶ 초등학생 등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 학교를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
- ▶ 1인 가구 등의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돌봄공동체 모델 확산

1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 자녀돌봄 공간 확충(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개소 수 단계적 확충 및 야간, 주말, 방학 등 운영시간 확대 추진
- 주요 이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운영 특성 유형화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공동육아나눔터 : 자녀를 동반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돌봄 공간으로 이웃 간 양육 정보와 육아 물품을 교류 및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20년 331개소 운영)

○ 초등 온종일 돌봄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돌봄 모델 확산(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 등
 - * 돌봄 선택시 중요도 : 접근성(59.9%)>돌봄서비스인력(17.5%), 접근성에서 이동시 안전한 보호 지원(85.1%), 집/학교와의 거리(83.0%) 중요 (김영란외, 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수요분석연구)
- 집과 인접한 곳에서 틈새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SOC) 등 유관기관 연계 방안 마련(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초등학생은 방과후 돌봄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향, 틈새 시간 돌봄 장소 확보 및 돌봄지원 방안 검토
 - * 가족센터SOC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활용, 틈새 돌봄 지원 모색

②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상 돌봄 지원**

□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1인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소셜다이닝 지원, 1인가구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 * 청년 1인가구의 나눔소통품앗이 지원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 지원
- 중장년·노년 가구의 일상생활 유지 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중장년·고령 1인 가구의 서로돌봄 생활나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하여 지원

<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 (예시) >

구분	주요 프로그램
청년	▶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중장년층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	▶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 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기반 지역사회 가족 간 소통·교류 활성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단위 소통·교류공간 마련,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 다양한 가족 간 정서적 교류, 정보공유 등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 여성 1인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여성 1인가구 등 대상범죄 예방체계 확충(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집중관제* 및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 강화

*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위험성이 높은 재범고위험군 등에 대해 세밀한 이동경로 및 일탈요인을 상시 분석하여 대응

- 여성 범죄 관련 부처 간 통계 기준 통일, 신종 범죄 통계 생산 등 통계 개선 추진

○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강화(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 위급상황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확산

- 여성안전제도 실태 점검을 위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발굴 및 환경 개선 추진

□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확산(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 활동 지원 기반 마련(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돌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단 구성·운영, 돌봄 코디네이터 양성 및 중간 지원조직 관리 등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 공동체 구성원, 아동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 모델 개발·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 *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부모 뿐만 아니라 이웃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돌봄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
- 지역별 돌봄 플랫폼 구축(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마을의 돌봄 가능 공간 발굴, 돌봄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 아동·노인·장애인 등 확대된 지역의 돌봄 수요 발굴 검토, 지역 돌봄 공동체 발굴·네트워크 및 지역 돌봄협의회 활동 등 지원
- 돌봄공동체 사업 추진 체계 마련(여성가족부)
 - 지역사회 돌봄활동 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등 돌봄 공동체 활동 근거 규정 마련 방안 모색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과 사례 >

유형	특징	사례
① 품앗이형	·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등	·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여섯 가정이 품앗이로 활동하며 돌봄 공동체로 발전 · 정보 공유, 재능기부 수업, 다국어 수업 등 틈새 돌봄과 아빠 돌봄 활동을 활발히 진행
② 마을 공동체형	· 지역주민이 커뮤니티 공간(북카페, 마을방, 마을밥상, 마을농장, 심터, 녹색가게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	· 주민들이 만든 공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며 오전에는 마을 프로그램 및 주민 소통 공간으로, 오후에는 틈새 돌봄 활동 공간으로 활용 · 경력단절 여성들이 강사로 참여, 재능기부 형태의 틈새 돌봄 활동을 실시
③ 주민경제 조직형	· 돌봄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 방과후 돌봄 공부방을 만들고, 부모, 주민, 이웃 단체들이 함께 공간을 운영·관리하며, 회원 아동 외에 저소득층 아동 대상 돌봄 제공 · 주민들의 배움 공간으로도 활용하며 세대 통합 돌봄을 모색

3-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 ▷ 아이돌봄서비스 등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돌봄 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서비스 질 제고
- ▷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등 강화

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 돌봄 대상 연령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차등 정부지원 확대 추진
 - (영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비율 및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등 실시
 - * (현행) 월 최대 200시간 한도, 이용요금의 15~85% 정부지원
 - (유아·초등) 등·하교 시간대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시간 돌봄(2시간 이하) 활성화 등 검토
 - * (현행) 최소 이용시간 2시간 → (개선) 2시간 이하 단시간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 부모·아동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정부지원 확대 검토
- 소득수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요금 체계 개편 추진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실태, 욕구 등에 관한 정기적 조사 실시 및 반영
 -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시, 적정 정부지원 범위 포함
 -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가 일시연계서비스(긴급돌봄요청)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요청방식* 개선

* (현재) 연결형(예.전화) → (개선) 비연결형(예.카카오톡) 또는 대화 요청 기능 도입 등

- 야간·주말 등 긴급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와 돌보미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긴급연계시스템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이 서비스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서비스 활용 문의에 채팅앱을 활용하여 고객 대기가 필요없는 자동상담 챗봇(Chatbot) 구축·운영

-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희망 가정에 필요한 아이돌보미 추천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서비스 연계 정보, 지역, 돌보미·아이 연령 등을 분석, 개인별 맞춤 추천정보 제공

□ 가정 돌봄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여성가족부)

- 출·퇴근 시간대 수요 집중, 돌보미의 단시간 돌봄 기피 등에 따른 수급미스매치 개선 방안 마련

-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산재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선발에서 서비스 이용 종료 이후까지 인력 관리 체계화로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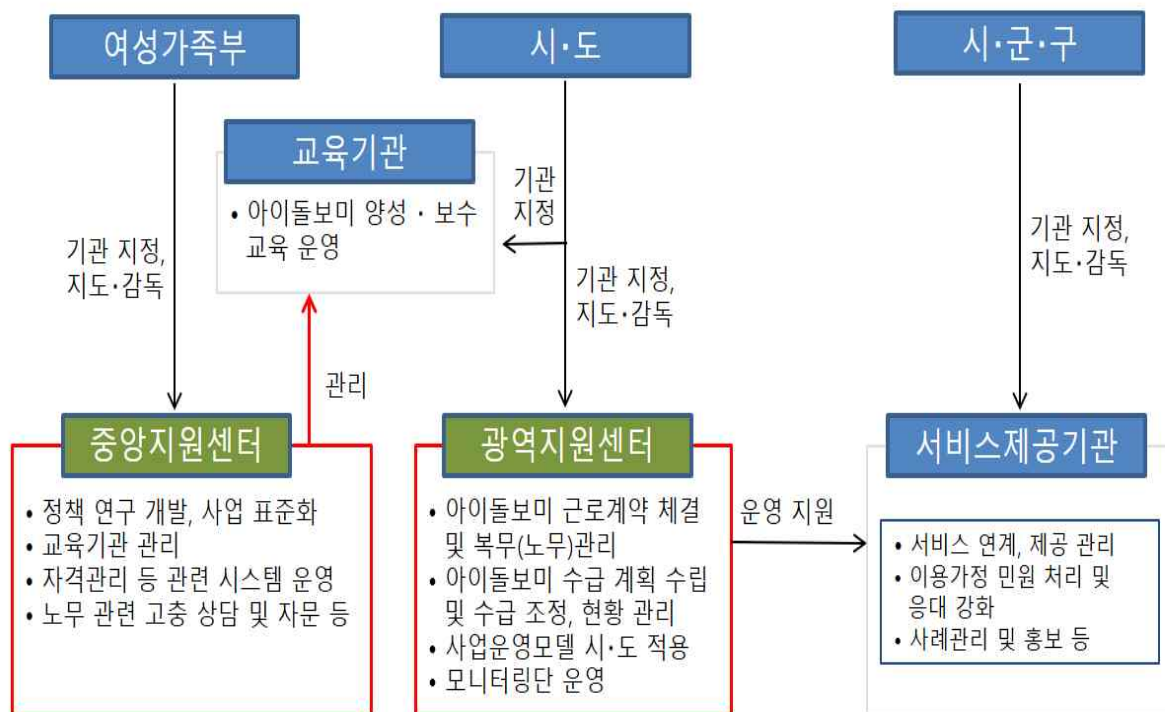
* (선발) 인·적성검사, 양성교육 → (서비스 제공) 돌보미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 → (보완) 보수교육

- 공공·민간 돌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여성가족부)
 -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 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 * 범죄경력, 건강상태에 대한 신원 확인을 원하는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정부가 확인증명서를 발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사업을 총괄·조정할 ‘중앙지원센터’ 지정·운영(여성가족부)
-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간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지역 간 서비스 이용 칸막이 해소*, 노무관리를 전담할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지방자치단체)
- * (기존) 아동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 소속 아이돌보미만 이용 가능
→ (개선) 시도단위에서 아이돌보미 수급 조절 및 연계

<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



② 재난·재해 시 돌봄공백 대응

□ 지역 기반 긴급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강화(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 기반 긴급 돌봄을 위한 대응 기구 설치(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역돌봄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응기구 설치, 긴급 돌봄 관련 신속한 대책 마련 및 지원
 - *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 및 지원 체계 구축
-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가정방문 돌봄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기준 마련·보급(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아동 돌봄시설, 노인 돌봄시설 등에 대한 재난 위기 또는 감염병 발생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 마련·적용(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긴급상황에서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감염병 등 상황발생 시 돌봄이 필요 아동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 노인, 장애인 돌봄시설 중단시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한 물품 지원, 재가 및 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결식 우려 아동·노인에 긴급 급식 지원(지방자치단체)
 - 도시락, 반찬 배달 또는 급식바우처 제공

3-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 ▷ 공적 돌봄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 등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가족돌봄자 지원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

1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등 국공립 교육·보육 시설 확충 및 질 제고(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 (어린이집) 공공보육 어린이집 설치현황과 이용률(현원기준)을 고려한 지역균형 공급을 위해, 설치·이용률 25% 미만 지역 우선 공급

- (유치원) 지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및 유형 다양화*, 방과후 과정 내실화, 통학차량 확대 등 서비스 질 개선

*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 돌봄인력 및 시간제 돌봄 확충을 통한 돌봄수요 충족(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보조교사 확대 및 시간제 보육 확충

○ 민간 돌봄 시설의 공공성·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 자녀돌봄을 위한 비용·서비스·시간 지원에 대한 종합적 중장기 양육지원체계 발전 방안 논의(보건복지부)

□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노인돌봄시설(노인요양시설, 주야간·단기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국공립 전환 등 추진
-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지원 확대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18.11.)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25년)
 - 종합 재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연계·협력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예방적 노인 의료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
 - 노인건강검진 등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 공공 요양시설 확충(~'22년, 130개소), 장기요양시설의 감염대응력 제고(평가지표 강화 등) 등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②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돌봄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공정한 보상 및 경력관리체계 마련(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요소, 세밀한 검토능력, 고객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 등 직무 판단 요소 재평가 등
- 낮은 보수,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및 교대·대체인력 지원

*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수준(가이드라인 준수율 99.7%, '19년)에 비해 시설 유형별로 94.1~71.9% 등 임금 격차 존재

-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직접 고용 등 처우개선 추진

*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 우수사례 확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추진('21년)

- 민간부문 돌봄인력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고용노동부)

*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

○ 돌봄일자리 등 여성 집중 업종에 대한 일자리 질 개선 등 관련 해외정책 연구조사 및 모범사례 확산(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돌봄종사자 인권 및 안전 보호체계 강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아동·노인돌봄 시설 종사자, 가정돌봄 종사자 등의 성희롱, 권리 침해 대응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휴식 지원(보건복지부)

- 치매가족 휴가제* 지원

*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1년에 6일 이내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돌봄자 교류소통 자조모임, 휴식프로그램 및 모임공간 등 지원

4-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 ①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②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

4-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①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 ② 가족·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 진행

- 30대 이상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음

* 일·가정 비슷 : 남성 40.3%, 여성 49.5%, 30대 42.9%, 40대 47.4%, 50대 45.4%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연령별 성별(2019년)>



통계청('19). 사회조사

통계청('19).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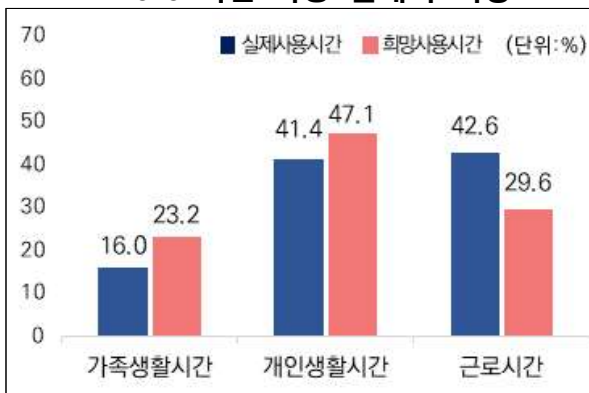
- 청년세대는 남녀 모두 생애과업* 1순위를 '일'로 인식, 가족 안에서 개인시간의 욕구나 가족역할과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

* 청년기(20-30) 생애과업 비중 : 1순위 '일'(여 36.2%, 남 35.9%), 2순위 '개인생활'(여 29.5%, 남 26.6%), '자녀'(여 12.6%, 남 14.1%)는 가장 낮은 비중

* 영역별 시간사용 희망: 개인생활시간(47.1%), 가족생활시간(28.2%), 근로시간(29.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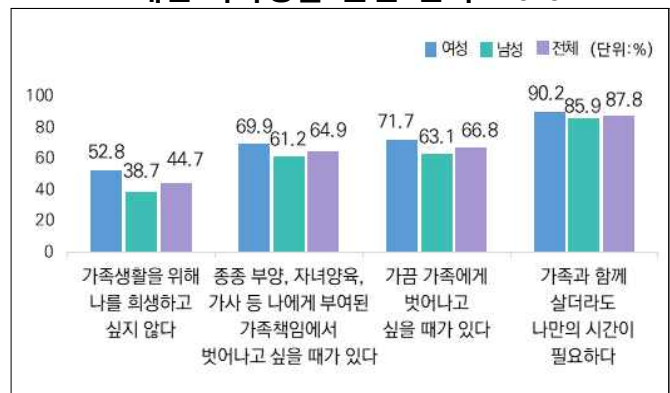
* 가사등 책임에서 벗어나고싶다 69.9%, 가족과 함께 살아도 개인시간 필요 90.3%

< 2040 시간 사용 실제와 희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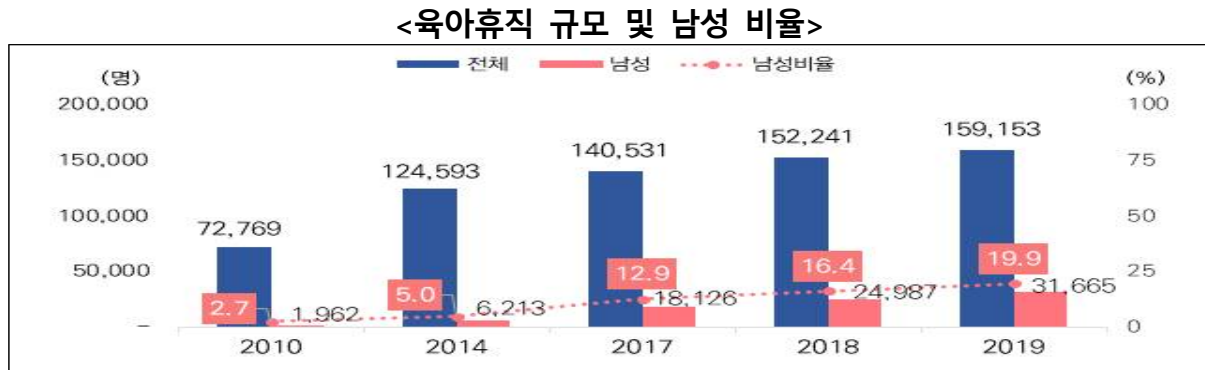
< 개인·가족생활 관련 인식 -2040>



□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충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제도 활용에는 한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도입('01년), 육아휴직 대상·기간 확대, 가족돌봄휴가제 도입('19. 8월) 등으로 육아휴직자 등 지속 증가 추세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15년) 5.6% → ('19년)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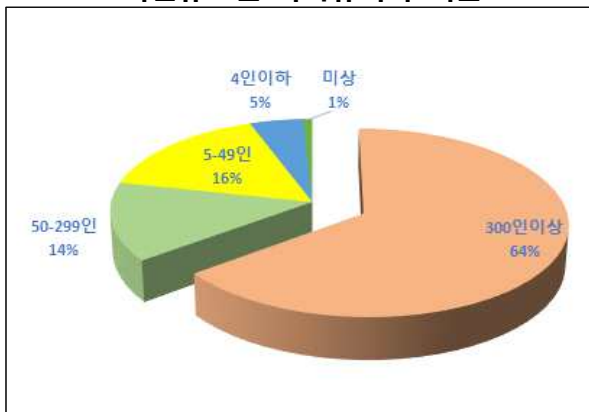


주: 2019년은 잠정치임 / 통계청(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보도자료

- 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로 활용, 제도 사각지대 온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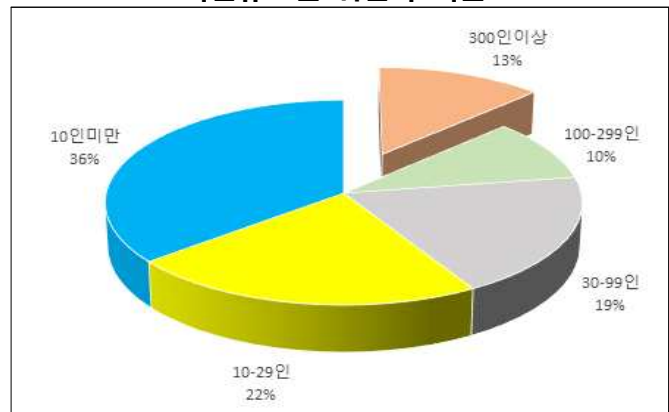
*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종사자 64.6% vs. 전체 취업자 중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12.7%(통계청, 2019)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율 >



통계청(2019). 일가정양립지표

<기업규모별 취업자 비율 >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장시간 근로, 가족내 역할의 성불평등 지속 등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 집중 문제 여전

-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관행 지속, 가족돌봄 시간은 부족

* 2018년 기준 OECD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734시간/한국은 1,967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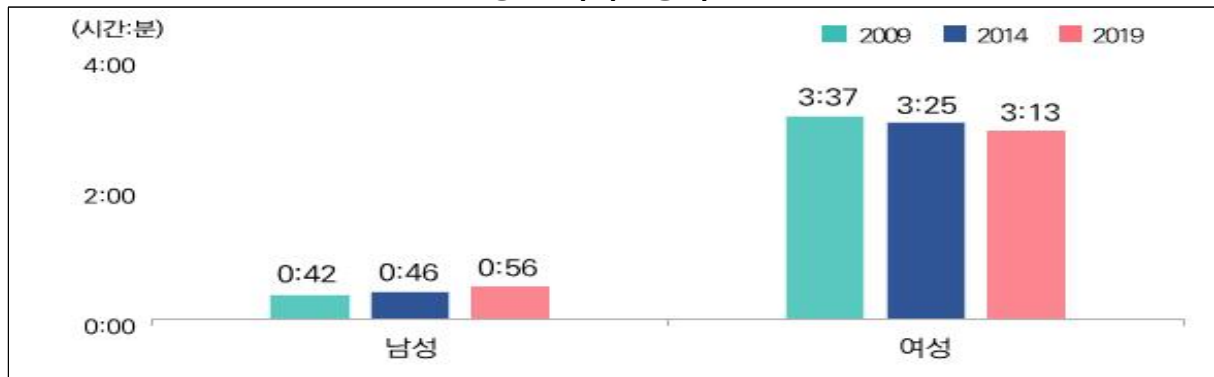
○ 가족 내 평등한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돌봄 수행에서 성불평등은 여전

- 이는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유배우 남녀의 고용율 격차 초래

*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 찬성 : ('08년) 32.4% → ('20년) 62.5%(통계청, 사회조사)

* 남녀간 고용율 차이 : (미혼) 1.6%p, 유배우 27.6%p(통계청, 2019년 일가정양립지표)

< 성별 가사노동시간 >



통계청(각년도) 생활시간조사

2

정책 방향

□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강화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부·모의 돌봄 권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이용 활성화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및 제도 내실화 등으로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

□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 및 사회환경 조성

○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직장·가족 문화 조성 및 남성돌봄자 롤모델 확산 등으로 성평등한 돌봄 정착

○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제고

4-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 ▷ 일하는 부·모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이용 활성화
-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우수기업 발굴·확산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

①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확대(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고용노동부)
 - 영아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22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 * 영아기 부·모 모두에게 양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아버지 육아를 장려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22년, 현재 50%, 120만원)
 -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고용노동부)

-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및 중소·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
- 지역 단위 기업,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이용 활성화(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문화 정착
 - 근로자 대상 제도 사용 관련 차별, 불리한 처우 등 상담 내실화 및 정보 제공 등
 - 사업주 대상 제도사용 촉진을 위한 적극 안내·지도 및 인센티브 지원 등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간접노무비 인센티브 지원 신설 등
-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추진
 - *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사유로 연 최대 90일 사용가능

②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활용도 높은 인센티브 발굴(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친화 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직원들이 체감함으로써 자발적 수요 창출이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 가족친화인증기업('20년 4,340개소): 중소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20개 인센티브 제공
 - *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가족친화인증 기업 임직원 대상 금융·관광·문화·체험·의료·생활분야 인센티브 제공
- 일·생활 균형을 적극 실천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혜택 지원(고용노동부)
 - 자원과 예산제약으로 제도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 * (근무혁신우수기업)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 원격·재택근무 정착 지원(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 비대면 업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소통, 협업, 자료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IT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 인증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인증 후 기업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제공,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 가족친화인증 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공적 검증 기능 강화
 - 기존의 제도 운영 위주에서 기업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심사항목 등 추가 검토
 - * (가족친화인증 최소 충족요건 예시)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운영 등

□ 일과 생활, 돌봄의 균형을 지향하는 직장문화 확산(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기업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 기업 내 성별다양성 및 일·생활 균형 등 수준을 진단하고 제도 설계를 제안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 * ('21년) 40개 기업 지원 → ('22년~) 지원 대상 지속 확대
 - 인사담당자 등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제공 등 추진
- 기업 특성을 고려한 가족친화 컨설팅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제도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집중 지원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내실화(여성가족부)
 -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 가족친화 우수사례집 제작·보급 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온라인 직장교육'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일·생활·돌봄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정시 퇴근, 유연한 근무, 연차사용 활성화 캠페인 실시
 - 업무와 생활의 공간·시간 분리 및 원격·재택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 혁신

4-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 남성 돌봄자 역량강화 및 롤모델 확산 등으로 성평등 돌봄 정착
- ▷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등의 돌봄친화적 개선 추진
-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 남성 돌봄자 역량 강화 지원 및 롤모델 확산(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남성돌봄자를 위한 돌봄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초보아빠 앱*(수첩) 개발 및 제공, 아빠학교 등 지원
 - *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등 연령별 아빠 역할 및 육아정보 제공
 - 배우자 및 부모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교육, 상담 등 제공
 -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서울시), 아빠육아 자조모임(용인) 등

<아빠육아 자조모임 사례>

육아휴직 중인 아빠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심지어 이웃 엄마들의 모임에서조차도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못하고 자꾸만 겉돌기 일쑤였고 이대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중략) '아빠육아자조모임'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고, 생소한 육아와 가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생명 줄처럼 느껴졌다.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려움은 노하우와 조언 섞인 대안으로, 염려는 안도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2019년 가족서비스 공모전 (발췌)

- 남성돌봄자들의 자발적 활동 지원 및 돌보는 남성 롤모델 발굴·확산(여성가족부)
 - 남성돌봄자들의 소모임 활동 지원, 활동성과를 온라인 등에서 공유, 아빠 육아수기 및 사례 공모 등 추진

□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조사 및 홍보**(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 구성원의 돌봄·가사노동 성평등성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항목 개발 및 조사 추진(여성가족부)
 - * 가족실태조사 문항 개발 및 부가조사 등으로 정례화 검토
- 명절 및 가정의 달 계기 상호돌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가족실천메시지개발,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이벤트, 기업·지역사회 등 민간연계 홍보
- 가족 내 평등한 돌봄·가사활동 보편화를 위한 콘텐츠 홍보(여성가족부)
 - ‘맞살림·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국민참여 공모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2 가족·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역할 제고**(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력 측정방안 마련(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단체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력에 대한 통합적 측정 가능한 지표 개편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개편, 분석 지표 간소화 및 분석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와 공유, 관련 정책 추진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가족친화사회환경실태조사 : 기초자치단체 수준 분석, 가족생활과 가족여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까지 포괄

-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성과 공유 및 확산 방안 검토(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의 발굴 및 공유, 포상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반영 등 검토

□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등의 돌봄친화적 개선 추진(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내 각종 시설·서비스의 돌봄 친화적 개선
 -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서비스의 돌봄 친화적이지 않은 요소를 발굴하여 시정(공공→민간 단계적 접근)
 -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서비스의 돌봄 및 가족 친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에스키즈존 발굴·인증 및 홍보, 가족친화 시설·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파악 및 제공 등
- 지역주민이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소통공간 외에도 지역사회 내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휴식 공간 등 마련
 - * 주거취약계층 고려, 가족센터 건립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적극 활용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제도의 실효성 제고(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한 가족 친화제도 개선 과제 발굴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 포함

- 가족친화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법 전면 개정 추진
 - 성평등한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 가족친화 지원센터, 가족친화 인증 심사기관 등 가족친화제도 관련 전달체계 기능과 역할 조정 및 정비 등

□ 지역 단위 가족친화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친화제도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내실화(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기업의 이해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기관 간 협력 및 가족친화경영 실천전략 공유
 - 지역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새일센터 등과 연계
 - * (’20년) 12개 기관이 MOU 체결을 통해 협의회 참여
- 지역 맞춤형 가족친화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 유관기관 연계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 가족친화지원사업(컨설팅, 직장교육, 인증기업 동행사업) 실시
 - * (’20) 5개 지역 유관기관이 지역맞춤 가족친화 교육 및 자문상담 실시
-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문화 환경 조성

VI. 향후 계획

- ▷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 기본계획 이행상황을 점검
- ▷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21.6월)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2021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
- 기본계획의 과제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
 - 중앙 단위 가족정책 협의회, 시·도 가족정책위원회 및 가족정책전략센터 등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를 점검
 - 가족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단위 정책 개선 및 우수 특화사업을 발굴·공유함으로써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

□ 예산 확보 및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아동학대·가정폭력 처벌, 양육비이행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계 법령 등 개정 추진
- (예산) 한부모 등 가족 특성별 양육지원, 보편적 가족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확대 등 예산 반영 필요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1-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1-1-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 가족유형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는 제도 발굴·정비 ■ 가족의 개념 확대 등 법령 제·개정 1-1-②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가족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 ■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활용 지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핵심 핵심 신규 신규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1-2-①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 가족 다양성 교육 운영체계 구축 및 확대 ■ 가족 다양성 관점의 반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홍보 활성화 1-2-②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 성평등한 가족의례 및 문화 확산 ■ 상호 존중하는 가족 관계 확립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신규 핵심, 신규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보호 1-3-① 가족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 가족다양성을 반영하는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 ■ 가족 내 폭력·학대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신규

1-3-②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현장 대응력 제고 1-3-③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아동학대 발생 가족에 대한 개입 강화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과 제 명	소관부처	비고
2-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1-① 가족변화를 반영한 생계비 등 급여 확대 ■ 가족 유형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개선 ■ 긴급복지 급여 확대 및 가족변화를 반영한 지급단위 개선 검토 2-1-② 아동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아동 관련 수당 등 자녀양육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가족특성별 자립 지원 강화 2-1-③ 가족수요에 맞는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대상 및 지원 확대 ■ 취약계층 가족 주거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2-2-① 한부모 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 ■ 자녀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이혼 전·후 지원 강화 ■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 만남·교류 확보 및 지원 2-2-②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 양육 한부모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 강화 ■ 양육비 지급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2-2-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역량 개발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 및 성장 지원 ■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 조성 2-2-④ 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 체계 강화 ■ 취약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및 자녀 양육 등 지원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핵심 신규
---	--	---------------------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2-3-①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반 조성 ■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지역의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한 가족센터(생활SOC) 설치 및 확대 ■ 가족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시·도 가족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신규
2-3-②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 가족상담전화 확대 및 기능 강화 ■ 가족교육·상담 등 서비스 확대 ■ 가족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3-③ 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취약·위기가족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과 제 명	소관부처	비고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3-1-①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 자녀돌봄 공간 확충 ■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협력강화 3-1-② 지역 공동체 기반 일상돌봄 지원 ■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 ■ 여성1인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 ■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확산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신규 핵심
3-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2-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가정 돌봄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2-② 재난·재해 시 돌봄공백 대응 ■ 지역 기반 긴급 돌봄 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강화 ■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3-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3-3-①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등 국공립 교육·보육 시설 확충 및 질 제고 ■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3-3-②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신규
---	--	-----------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과 제 명	소관부처	비고
4-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4-1-①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이용 활성화 4-1-②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 가족친화 인증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일과 생활, 돌봄의 균형을 지향하는 직장문화 확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핵심

4-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2-①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 남성 돌봄자 역량 강화 지원 및 롤모델 확산 ■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4-2-② 가족·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역할 제고 ■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등의 돌봄친화적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신규 신규
4-2-③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역 단위 가족친화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신규